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2004. 12

홍 범 교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국제조세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제조세에 있어서 거주지 과세라든가 원천지 과세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조세조약에 의존하게 된다. 조세조약은 협상의 대표적인 결과라고 하겠으며, 국제조세의 거의 모든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면 결국 협상에 의해 결론이 나게 마련이다. 조세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전가격 문제이며, 이전가격 문제가 중요한 것은 소득의 국가별 귀속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재화 위주의 거래에서 서비스 거래가 추가되고, 전통적인 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새롭게 출현하는 등 거래의 종류라든가 방식 등이 새롭게 나타남에 따라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소득 귀속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 문제도 그러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최근 자본시장의 개방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금융거래의 규모가 급속하게 커짐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소득 귀속 문제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간다고 하겠다.

선진국간의 국제조세문제에 있어 논의를 이끌어가는 OECD에서는 당연히 동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과세당국뿐 아니라 금융업계와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 자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본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우리의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개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추세이며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파생상품 및 유가증권의 24시간 거래에 의하여 벌어들이는 국제금융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각 거점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았다. 즉 이들 상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국가들 간에 각각 자본 및 위험 부담의 정도, 인적 기능에 의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과세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현재 이러한 배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과 제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독립기업원칙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홍범교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저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토론을 통하여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세미나를 통하여 조언을 주신 김&장의 한만수 변호사, 율촌의 오윤 변호사, 본원의 안종석 박사, 전병목 박사 그리고 김&장의 하봉우 고문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준 심재진 주임연구원, 류인경 연구원, 신수미 연구조원, 출판단계에서 도움을 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주요 내용

1. 다국적 금융회사와 국제금융소득의 귀속

1980년대 이래 경제 개방과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국제금융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그들의 자본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의 금융시장에서 초과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를 커버하는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다국적 금융회사의 존재를 세계 각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각 거래거점별로 어떻게 이를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 OECD의 논의와 정책과제

따라서 OECD에서는 제6작업반에서 이 문제를 크게 4부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주로 다루고, 제2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은행의 국제영업에 따른 소득배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24시간 베이스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한 소득의 분배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보험분야의 쟁점에 대

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부의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및 유가증권의 24시간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4시간 글로벌 트레이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거래모델(integrated trading model)은 각 금융허브에서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하며, 다음 시간대의 허브로 거래의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이고, 중앙집중형 관리모델(centralized product management model)은 한 거점에서 전세계의 글로벌 트레이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물론 판매나 마케팅은 세계 각 처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에서 이루어진다. 분리기업모델(separate enterprise model)은 각 거래거점이 독립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며, 상호거래도 이루어진다. 물론 당해 금융그룹의 중앙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거래제한기준을 설정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각 거래거점이 자유로이 거래한다.

OECD에서는 분리기업모델이나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에서는 소득의 귀속에 있어 이전가격체제의 전통적인 가격기준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통합거래모델에서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분할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거래의 고정사업장 개념과 관련하여 기능분석 및 실무분석을 통하여 자본과 인적기능(people function)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이에 따라 각 거래거점에 소득을 분할 귀속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국제금융 거래 소득과세의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고정사업장의 개념이다. 고정사업장은 국제조세에 있어 원천지과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OECD 모델 조약이나 이전가격과세 지침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복잡한 개념으로 남아 있고, 전자상거래나 금융서비스거래와 같

은 새로운 거래 형태가 등장하면 이들 거래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소득 귀속 문제이다. OECD에서는 종속대리인 기업을 주인(principal)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대리인(agent)으로 보아 대리인으로서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다국적 금융기업들은 서비스 수수료의 지급으로 종속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안이다.

셋째, 기존에 규범화되어 있는 이전가격세제에 있어 정상가격을 정확하게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나마 정상가격대만을 도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상가격대 안에서 '자본'과 '인적기능'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넷째, 국제금융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금융그룹 내부의 위험전가거래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이다. 내부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닌 경우 사후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과세목적상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ECD에서는 이러한 그룹 내부의 위험전가거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면, 금융계에서는 현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이익분할법이 사용될 경우, 손실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손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 자국에게 불리하도록 손실을 자국에 위치한 지점이나 자회사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많은 나라들이 손실의 배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

끝으로 그동안 규범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독립기업간 원칙이 실제 적용에 있어 노정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세제로서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OECD의 공식입장은 독립기업간 원칙에 근거한 이전가격세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통합을 이룩한 유럽에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현재와 같은 골격의 이전가격세제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국제거래에서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super royalty 조항(미국세법 제482조)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대와의 타협의 산물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비교이익법 등 비전통적인 방법을 포함한 확장된 의미의 독립가격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방법들은 사실상 단일기업과세제도와 유사한 측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연방정부 형태의 국가에서 각 주간의 거래에 있어 적용되는 것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단일기업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단일기업으로 판정이 되면, 그 단일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기여를 하였고, 각 거래거점은 어느 만큼 그러한 요소들을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게 된다.

OECD 회원국이 대부분 유럽국가인 것을 고려한다면 다소 역설적일 수 있으나, OECD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역내에서의 기업통합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얻어가고 있다. 물론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실시에도 위에서 언급한 판정기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유럽에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가시적인 가

능성이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II. 정책시사점

OECD의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24시간 거래에서 얻는 국제금융소득의 배분에 있어 자본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 귀속을 위한 기능분석을 행함에 있어 판매나 마케팅 기능보다는 트레이딩과 위험관리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자은행들은 자본과 트레이딩/위험관리를 통하여 초과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이며 동 시스템하에서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집중형 관리 모델의 본부를 설정할 입지가 되지 못하며, 통합거래모델에서도 24시간 거래의 거점으로서 뉴욕, 런던, 홍콩, 동경 등과 같은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세할 소득이 별로 생기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OECD의 논의가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논의 결과가 향후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 방향의 귀결은 우리와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전가격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의 관련 법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선진국의 입법사례와 OECD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거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결국 사안별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

이라는 것이 접근하는 이해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법이 보다 정교하지 못함에서 오는 적용의 유연성은 과세당국의 몫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확대되어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조세관련 법령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정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종속대리인 PE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와 같은 것은 국제적 대형 투자은행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현재의 OECD 제안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방향이 유지되도록 힘을 필요가 있다. 소득 귀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새로운 모델들, 내부 위험전가 거래의 처리방안, 손실의 배분 메커니즘 등의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국제적인 세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하겠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가격원칙을 이용한 이전가격세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수십개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금융그룹이 자본의 배분을 위하여 적어도 2~3개의 배분 시스템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나라마다 그 나라의 세법에 맞춰 조금씩 달리 변형하여 적용해야 한다면 납세순응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다국적 금융그룹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러한 방법이 일관성 있게 사용된다면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유럽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를 위

하여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단일기업으로의 판정, 결정 요소의 선택, 가중치의 결정 등 실무적인 문제부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의 포기라는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어 단기간 안에 국제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거래 유형을 고려하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단일기업과세제도에서 채택될 요소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국제조세는 '협상'인만큼 협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금융 역량의 내실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세제의 공통적인 전형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9
II. 국제금융거래와 다국적 금융회사	23
1. 국제금융거래 현황	23
2.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영업 실태	29
3.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운영	33
가. 위험관리	33
나. 다국적 금융회사의 3가지 조직 유형	39
다. 기능별 분류	41
III. 국제금융소득과세에 대한 OECD의 논의	46
1. 배경	48
2. 국제금융거래	49
가. 대상 금융거래 및 주체	49
나. 기능분석	49
3.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전가격	53
가. 일반적 원칙	53
나. 글로벌 트레이딩의 분석	54
다. 거래이윤법	60
4.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문제	64
가.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활동 및 조건의 결정	64
나.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의 귀속 결정	67
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통한 글로벌 트레이딩	70

IV. 국제금융거래 소득과세의 정책과제	71
1. 고정사업장의 개념	72
2.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소득 귀속	73
3. 소득의 귀속	76
가. 헤지펀드모형	77
나. 이윤기반 보상방식	79
4. 내부 위험전가 거래의 처리	84
5. 손실의 배분	86
6. 독립기업간 원칙의 적용과 단일기업과세제도	87
V. 이전가격세제의 전망	90
1. 독립기업 원칙의 의미	90
2.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역사	92
가. 미국 州間의 단일과세제도	93
나. 국제적 단일기업과세제도	95
다. 단일기업과세를 둘러싼 움직임	96
3. 대안으로서의 단일기업과세제도	99
VI. 우리나라의 현황과 제도 정비	101
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제도	102
가. 이전가격제도의 의의	102
나. 국외특수관계자	103
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05
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15
2. 기타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현황	120
가. 국내/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	122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규정	126

3. 우리나라의 관련 과세규정에 대한 평가	135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35
나. 법인세법	136
4. 시사점	138
VII. 결 론	143
참고문헌	147
<부록> 이전가격관련 OECD 모델 조약 규정	150

표목차

<표 II-1>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3
<표 II-2>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6
<표 II-3> BIS 보고 은행들의 국제거래	7
<표 II-4> 국제 채권시장 순발행액	8
<표 II-5> 우리나라 증권회사 해외 진출 현황	9
<표 II-6> 국외점포별 업무의 예	9
<표 II-7> 금융위험의 유형	7
<표 II-8> 국내은행의 위험측정시스템 운영 현황	9
<표 IV-1> 시장위험과 성과급	8
<표 IV-2> 헤지펀드의 수익배분	9
<표 IV-3> 대안 A의 결과	8
<표 IV-4> 대안 B의 결과	8
<표 VI-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체제	12
<표 VI-2> 비교 대상업체의 영업 현황	12
<표 VI-3> Berry ratio 분석	13
<표 VI-4> 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비교	14
<표 VI-5>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	16

그림목차

[그림 II-1] 시티그룹 글로벌 운영	31
[그림 II-2] 크레딧 리요네 한국지점 조직도	33
[그림 VI-1] 주식소유비율의 계산 ①	104
[그림 VI-2] 주식소유비율의 계산 ②	105
[그림 VI-3] 재판매가격법	107
[그림 VI-4] 원가가산법	108
[그림 VI-5] 이익분할법	109
[그림 VI-6] 거래순이익률법	110

I. 서론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의 국제거래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과세 관할권하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또는 비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¹⁾. 이는 국제소득과세에 있어 두 가지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천지 과세원칙(source principle)과 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을 나라마다 일관성 있게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통하여 덜어 주고 있다. OECD에서는 모델조세조약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간 과세권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주재국의 과세당국은 해당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권의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당국간의 세수배분의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서 OECD에서는 일찍이 이전가격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을 발표한 바 있다. 동 지침은 관련 기업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조작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으로 관련기업간의 수익을 계산하는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을

1) Neighbor(2002)는 국제거래의 60% 이상이 다국적기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 되기 때문에 지침의 해석을 두고 회원국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전가격의 문제는 그 적용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사안별로 그 특징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독립가격원칙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osenbloom(2004)은 최근 세미나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의 선택 등 독립가격원칙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 때문에 단일기업과세제도(formulary approach)가 앞으로 이전 가격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osenbloom의 이러한 의견은 OECD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EU의 경제통합과 함께 유럽에서는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 예를 들면 신상품을 이용한 국제금융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출현 등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특히 금융산업에 있어서 독립가격원칙을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하겠다. 국제적인 금융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발생 시점, 소득원천지국의 과세 및 소득금액의 산정이 기존의 정상가격결정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 판매, R&D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 과세 권역에 걸친 서비스의 결과, 소득이 공동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소득의 과세 권역별 분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OECD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은행, 증권 및 보험의 분야별로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이러한 노력은 이 문제 전반에 걸쳐 권위 있는 근본적 방향(guideline)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

도로 볼 수 있다. OECD의 논의 결과는 모델조세조약 제5, 7, 9조에 대한 주석서의 개정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OECD에서 보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 2005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²⁾. 즉 본 연구의 의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국제금융소득과세의 문제점을 적시(identify) 하고, 그 시사점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제화·대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금융 그룹들은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할 것인 데 반하여,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정통하고 있음으로써 필요한 세제개편을 통하여 금융회사나 기업들에게 투명한 조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세 환경은 금융회사들에게는 운영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과세당국에게는 국제 금융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거래마다 해당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현안 문제인 반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는 기존의 원칙을 원용하여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기업들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집행과정에 있어서 과세당국의 자의성이 큰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OECD에서의 정상가격원칙에 대한 다양한 방안 제시의 과정은 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미국과 유럽간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³⁾. 따라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

2) 2004년 하반기에 OECD의 작업 스케줄 변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론부분에서 다시 설명한다.

3)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 온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국가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창희(2004) pp. 665~671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다만,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부적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안별(case-by-case) 해결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우선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되는 국제금융거래 현황과 국내 또는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실태와 다국적 금융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III장에서는 글로벌 트레이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배분과 관련하여 현재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사항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짚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의 제도적 변화를 전망하여 본다. 제VI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연관지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구해보며, 마지막으로 제VII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국제금융거래와 다국적 금융회사

1. 국제금융거래 현황

국제금융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거래액에 있어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금융거래의 단면을 보는 한 방법으로서 BIS분류에 따라 은행간 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을 볼 수 있다.

<표 II-1>에서 장외 파생상품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2003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액면가액 197조달러에 이르는 파생상품 계약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이자율 관련 상품에 대한 거래가 약 142조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이 약 24조달러의 외환상품 거래, 그리고 약 4조달러 규모의 주식관련 상품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자율 관련 상품 가운데는 이자율 스왑이 111조달러로 단연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 역시 이자율 관련 상품의 거래가 약 4조 3천억달러로 가장 많고, 상품별로 액면가액기준과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표 II-2>에서는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약건수에 있어 선물·옵션 모두 이자율 관련 상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약 13.7조달러의 선물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 옵션계약은 약 23조달러에 이른다. 거래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어 2003년 기준으로 선물거래액은 약 625조달러, 옵션거래액은 약 249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상품별 거래 비중은 역시 이자율 관련 상품이 압도적이고, 이어 주가지수 관련 상품과 외환상품의 순이다.

<표 II-3>에서는 BIS 보고 은행들의 국제거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들의 국제거래는 대부분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시 미국 달러와 유로화 표시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4년 3월말 잔액 기준으로 전체 거래 채무는 약 17조달러 정도이다.

<표 II-4>는 국제 채권시장에서 순 발행액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6월말 잔액 기준으로 약 12조달러가 발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채가 약 11.7조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역시 미국과 유럽에서 대부분의 채권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단위: 10억 미달러)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2003말
명목원금(Notional amounts outstanding)						
전체 계약	80,309	88,202	95,200	111,178	141,665	197,167
▪ 외환 관련 계약	18,011	14,344	15,666	16,748	18,448	24,475
선도 및 외환 스왑	12,063	9,593	10,134	10,336	10,719	12,387
통화 스왑	2,253	2,444	3,194	3,942	4,503	6,371
옵션	3,695	2,307	2,338	2,470	3,226	5,717
▪ 이자율 관련 계약	50,015	60,091	64,668	77,568	101,658	141,991
선도계약(FRA)	5,756	6,775	6,423	7,737	8,792	10,769
이자율 스왑	36,262	43,936	48,768	58,897	79,120	111,209
옵션	7,997	9,380	9,476	10,933	13,746	20,012
▪ 주식 관련 계약	1,488	1,809	1,891	1,881	2,309	3,787
선도 및 스왑	146	283	335	320	364	601
옵션	1,342	1,527	1,555	1,561	1,944	3,186
▪ 상품 관련 계약	408	548	662	598	923	1,406
금	175	243	218	231	315	344
기타 상품	233	305	445	367	608	1,062
- 선도 및 스왑	137	163	248	217	402	420
- 옵션	97	143	196	150	206	642
▪ 기타	10,387	11,408	12,313	14,384	18,328	25,508
총 시장가치(Gross market values)						
전체 계약	3,232	2,813	3,183	3,788	6,360	6,987
▪ 외환 관련 계약	786	662	849	779	881	1,301
선도 및 외환 스왑	491	352	469	374	468	607
통화 스왑	200	250	313	335	337	557
옵션	96	60	67	70	76	136
▪ 이자율 관련 계약	1,675	1,304	1,426	2,210	4,266	4,328
선도 계약(FRA)	15	12	12	19	22	19
이자율 스왑	1,509	1,150	1,260	1,969	3,864	3,918
옵션	152	141	154	222	381	391
▪ 주식 관련 계약	236	359	289	205	255	274
선도 및 스왑	44	71	61	58	61	57
옵션	192	288	229	147	194	217
▪ 상품 관련 계약	43	60	133	75	86	128
금	13	23	17	20	28	39
기타 상품	30	37	116	56	58	88
▪ 기타	492	428	485	519	871	957

자료: BIS, *Quarterly Review*, September 2004

<표 II-2>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단위: 10억 미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미결제약정(명목 원금 기준)						
선물						
▪ 전체 합계	8,354.6	8,301.8	8,353.7	9,669.0	10,328.1	13,705.7
이자율	8,031.4	7,924.8	7,907.8	9,269.5	9,955.6	13,123.8
통화	31.7	36.7	74.4	65.6	47.0	80.1
주가지수	291.5	340.3	371.5	333.9	325.5	501.9
옵션						
▪ 전체 합계	5,580.1	5,288.1	5,904.0	14,095.1	13,487.1	23,028.6
이자율	4,623.5	3,755.5	4,734.2	12,492.8	11,759.5	20,793.8
통화	49.2	22.4	21.4	27.4	27.4	37.9
주가지수	907.4	1,510.2	1,148.3	1,574.8	1,700.2	2,196.9
거래액(명목 원금 기준)						
선물						
▪ 전체 합계	317,889.3	288,989.9	318,020.2	445,998.0	501,846.5	625,111.4
이자율	296,275.2	265,005.1	292,204.3	420,940.3	472,827.1	588,740.8
통화	2,543.5	2,585.8	2,416.8	2,499.2	2,513.1	3,937.4
주가지수	19,070.6	21,398.9	23,399.2	22,558.5	26,506.2	32,433.2
옵션						
▪ 전체 합계	70,457.6	62,171.3	66,361.3	148,363.2	191,302.0	248,991.1
이자율	55,647.9	45,822.1	47,379.0	122,766.0	154,509.7	205,385.9
통화	543.7	288.6	211.8	356.0	422.7	492.3
주가지수	14,266.0	16,060.6	18,770.5	25,241.4	36,369.6	43,113.0

자료: BIS, *Quarterly Review*, September 2004

<표 II-3> BIS 보고 은행들의 국제거래

(단위: 10억 USD¹⁾)

	2002	2003	2004 Q1	잔액 (2004. 3월말)
전체 해외 청구권(claims)	740.1	1,076.6	1,180.8	17,185.2
對 은행	425.0	531.0	777.9	11,084.2
對 비은행금융기관	315.2	545.5	402.9	6,101.0
대출: 對 은행	392.9	453.2	701.7	9,449.0
對 비은행금융기관	103.8	277.4	213.5	3,225.4
증권: 對 은행	36.3	75.4	64.0	1,154.5
對 비은행금융기관	202.2	208.2	169.6	2,555.3
청구권의 통화별 분류				
미국 달러	320.4	500.3	559.2	6,881.7
유로	453.3	503.0	371.2	6,333.8
엔	-42.3	-50.4	-3.2	785.2
기타 통화	8.7	123.7	253.6	3,184.5
차입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재지별 분류				
선진국	315.1	459.3	339.6	4,807.5
유로 지역	117.4	157.5	149.9	2,151.6
일본	4.1	38.4	-0.3	184.8
미국	153.1	179.9	101.3	1,621.4
역외금융 센터	18.8	99.8	42.7	672.2
신흥 경제	-16.5	5.1	25.1	572.7
기타 ³⁾	-2.2	-18.7	-4.5	48.6
메모: 지역(local) 청구권 ⁴⁾	44.5	415.2	194.2	2,534.1

주: 1) 계절효과는 감안하지 않음.

2) 국제기구에 대한 청구권 포함.

3) 은행이 소재한 나라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 청구권

4) 환율조정을 한 수치임.

자료: BIS, *Quarterly Review*, September 2004

<표 II-4> 국제 채권시장 순발행액

(단위: 10억 미달러)

	2002	2003	2004		잔액 (2004. 6월말)
			Q1	Q2	
순 발행 합계	1,011.4	1,472.4	521.0	347.5	12,332.0
머니마켓 ¹⁾	1.7	75.4	35.0	2.6	596.0
단기채(CP)	23.7	83.3	9.0	-3.4	414.9
채권 ¹⁾	1,009.7	1,397.0	486.0	344.9	11,736.0
변동금리채	198.8	392.4	154.4	167.9	3,112.7
고정금리채	800.8	983.7	338.5	169.5	8,267.4
주식연관채	10.2	20.9	-6.9	7.5	355.9
선진국	945.5	1,365.9	486.0	316.7	11,002.0
미국	330.7	275.6	126.4	6.9	3,200.3
유로 지역	479.1	768.8	232.7	214.8	5,306.0
일본	-22.7	-1.0	6.3	11.0	283.1
역외 센터	8.1	16.3	0.9	5.0	137.4
신흥 경제	36.9	66.9	24.1	18.7	676.2
금융기관 발행	833.2	1,188.6	417.3	282.1	9,082.4
민간	697.9	984.8	339.8	234.6	7,675.4
공공	135.4	203.8	77.5	47.5	1,407.0
기업 발행	55.3	113.3	7.4	10.8	1,495.9
민간	44.5	95.3	-0.0	7.2	1,249.1
공사	10.8	18.0	7.5	3.5	246.8
정부	102.0	147.3	86.2	47.6	1,237.2
국제기구	20.9	23.2	10.0	7.0	516.5
메모: 국내(domestic) CP ²⁾	-99.1	-41.7	58.4	-10.6	1,928.4
미국 CP	-91.4	-81.3	47.8	-26.8	1,309.7

주: 1) 국내시장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된 채권(notes)은 제외.

2) 2004 2/4분기 자료는 부분적으로 추정치.

자료: BIS, *Quarterly Review*, September 2004.

2.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영업 실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영업은 활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대형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또는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점의 경우 도매금융이나 유가증권 운용(주로 한국물), 현지법인의 경우 소매금융이 주요 업무이다. 증권회사의 경우는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1개사가 해외에 38개의 지점·현지법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동거점들은 런던, 뉴욕, 홍콩, 상해, 동경에 있으며, 헝가리에 사무소 1곳이 개설되어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기채 업무, 한국물 DR 거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글로벌 영업 형태의 거래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II-5> 우리나라 증권회사 해외 진출 현황

(2004. 6월말 기준)

진출형태	사무소	현지법인	지점	계
총 41개사	15	22	1	38

자료: 『증권』, 2004. 9.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은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해외영업을 축소함으로써 더욱 줄어들었다⁴⁾. <표 II-6>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인 국민은행의 해외 점포망의 주요 업무를 대표적으로 살

4) 우리나라 은행들의 미국 진출 현황을 보면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총 18개 은행이 지점 및 현지법인의 형태로 35개의 거점을 갖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4년 6월 말 현재 총 7개 은행이 지점 8개, 현지법인 2개를 갖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2004년 6월 말 현재 총 39개에 이르고 있다.

펴본 것이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대동소이하하며, 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 관련 업무, 교포 여신 등이 주요 업무임을 알 수 있다.

<표 II-6> 국외점포별 업무의 예

동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타행 YEN 결제센터 ◆ 외국환업무 중점 취급(L/C결제, 송금업무, 유산스 인수) ◆ 교포여신에 특화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ZD, ASD 등 외국환업무 중점 취급(L/C결제, 송금업무, 유산스 인수) ◆ 교포 여신에 특화
뉴 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행 USD 결제센터 ◆ 외국환업무 중점 취급(L/C결제, 송금업무, 유산스 인수)
런 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G, EUR 등 유로지역 당/타행 결제센터 ◆ 외국환업무 중점 취급(L/C결제, 송금업무, 유산스 인수)
홍 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동남아시아지역 USD 결제센터 ◆ 외국환업무 중점 취급(L/C결제, 송금업무, 유산스 인수) ◆ 향후 Asia 지역에서 채권발행 시 주선은행 Booking Center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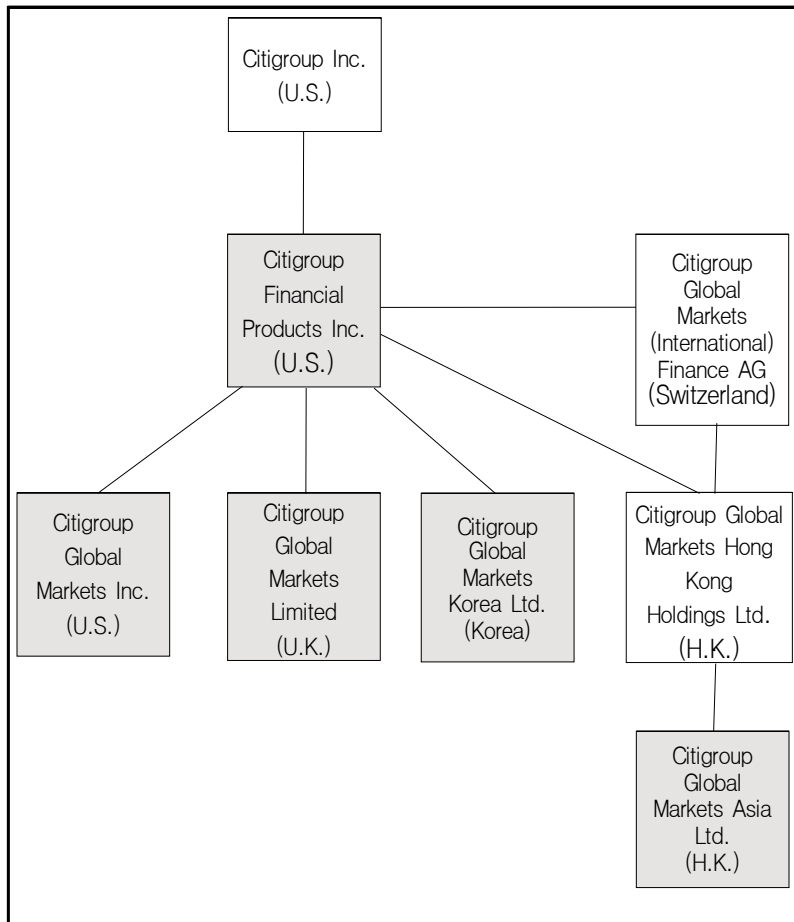
주: 현재 국외점포에서 대기업 여신 및 유가증권, 증권 투자업무를 중단하였으나 2005년 재개 예정.

한편, 다국적 투자은행 및 증권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점 및 현지법인의 형태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은 그야말로 모그룹의 글로벌 경영의 일부로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이나 동경과 같이 아시아권에서의 지역적인 영업을 총괄하는 본부로서의 역할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창구로서의 역할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서 제피모건(JP Morgan), 메릴린치(Merrill Lynch),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리먼브러더스(Lehman Brothers), 퍼스트보스턴(CSFB), 암로(ABN

Amro), 맥쿼리(Macquarie), 다이와(大和), 노무라(野村), 유비에스(UB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투자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시티그룹(Citigroup)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면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국(이 경우에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각 금융 중심지에 자회사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는 금융허브로서의 역할보다는 한국 내에서의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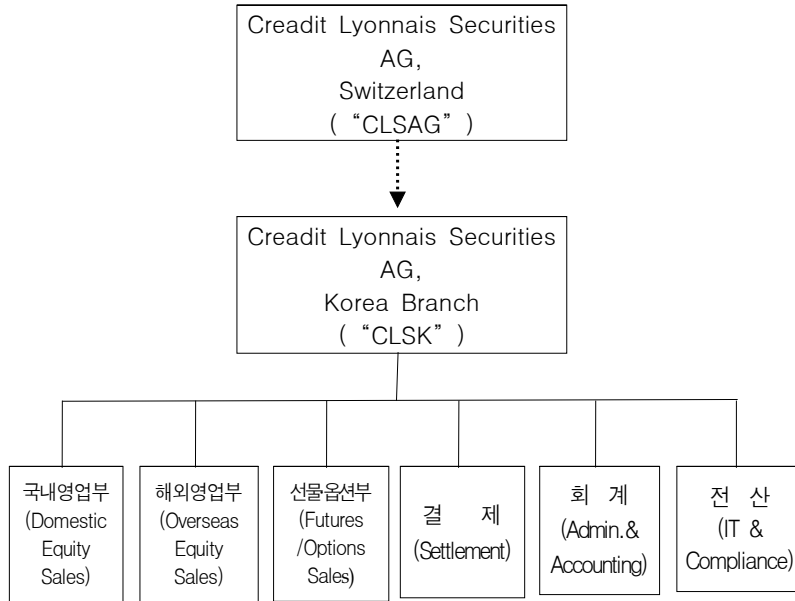
[그림 II-1] 시티그룹 글로벌 운영



1999년 5월 증권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자본 제한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해외 대형 증권사에 의해 국내에 설립된 지점 수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개방되고, 이에 따라 한국주식시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내 투자를 중개하는 해외 대형증권회사의 지점 역할도 확대되어 왔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주문된 증권 매수/매도 주문을 한국 내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의 업무를 크레딧 리요네(CLSK) 증권 한국지점의 예를 통하여 보면 [그림 II-2]와 같다. CLSK 한국지점은 판매부서로서 국내영업부(DES), 해외영업부(OES), 선물·옵션부(FOS)로 나뉘어 있고, 지원부서로서 결제, 회계 및 전산부서가 있다. 한국지점은 크레딧 리요네 증권그룹이 해외에서 받은 한국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집행한다. 즉 크레딧 리요네 증권그룹이 한국의 주식 및 선물/옵션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주식시황, 경제 및 종목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으로 거래 주문을 유발하고, 해외 영업부와 선물·옵션부는 이러한 주문을 집행한다. 국내영업부는 한국 내에서의 투자자를 상대로 매매중개업무를 한다. 선물·옵션부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동 상품의 주문을 처리하는 부서이다. 외국은행들의 경우 주력 업무는 국내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 주문의 처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업무보다 고유계정의 운용에 더 큰 비중을 두기도 한다.

[그림 II-2] 크레딧 리요네 증권 한국지점 조직도



3.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운영

가. 위험관리

1) BIS 자기자본 규제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 진전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빈발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도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⁵⁾. 또한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확대되고

5) 1980년대 이후 급증한 미국의 상업은행과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금융의 겸업화가 진전되면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국제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예전과 달리 수동적인 자금중개의 역할을 떠나 보다 적극적인 중개 및 수익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상 업무의 하나로 부각되었고, 금융 및 경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에 대한 국제적 감독기준 및 규제가 마련되었고, 1992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⁶⁾ 정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BIS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감독위원회에서 1988년 7월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BIS협약)에서 제시한 것이다⁷⁾. 이 협약에 따라 회원국 은행들은 1992년 말부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진전에 따라 은행의 외화자산,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보유가 증가하면서 시장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신용위험만을 반영할 뿐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6년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을 감안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제도」(수정 BIS 협약)가 도입되었고, 회원국 은행들은 1997년 말부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시장위험을 반영하게 되었다.

기존 BIS협약 시행 이후 은행 위험관리 및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

6)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보유 위험자산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을 확보했는가로 측정한다.

7) 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 위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라 위험 측정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기존 BIS 협약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가 미흡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 차익거래(Capital Arbitrage)⁸⁾를 야기하였다. 한편 운영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기존 협약에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신용과생금융상품 등 신용위험 완화 기법들이 등장하면서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위험관리 방법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경향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독기능 및 시장규율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1999년 6월 「신자기자본규제기준」(신BIS협약, 또는 Basel II)을 발표하고, 각국과의 협의를 거쳐 2004년 6월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신BIS협약은 본래 2006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가 1992년 말에 도입되었고, 감독당국은 1995년 말부터 국내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였다. 국내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기준(8%)에 미달되었으나 공적자금 투입 및 자구노력을 통해 2003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평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2%이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2000년 말 시장위험을 감안한 자기자본비율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1월부터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신BIS협약(바젤II)은 선진국과

8) 위험 관련 감독기준이 실제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 수준의 변화없이 감독기준상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거나, 또는 감독기준상의 위험자산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규제회피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도가 가장 낮은 채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재매입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원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을 그대로 부담하지만, 감독기준상 위험자산 보유금액은 자산유동화채권 보유금액으로 감소한다(박현수·전효찬(2004)).

같이 2006년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위험의 유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감수하는 위험으로서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위험은 환율, 이자율, 주식 및 상품가격의 변동과 같이 글로벌 트레이딩의 목적을 위해 전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포지션(positions)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시장위험은 또한 특정한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옵션의 경우와 같이 시장가격의 역변화에 대한 헤지 포지션이 없이 유지되는 경우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에게 매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상되는 지불(payments)을 받지 못할 위험이다. 신용파생상품의 발전은 은행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대출로부터 발생한 신용위험을 독립적인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위험과 시장위험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개별거래 기반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반하에서 평가되어진다. 독립적인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에 의해 인수된 신용위험은 다른 고객거래의 결과 나타난 위험과 마찬가지로 관리되어야 한다.

<표 II-7> 금융위험의 유형

유형	위험의 원천
시장위험(Market Risk)	▪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의 변동
신용위험(Credit Risk)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 금융회사 내부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업무처리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 등 ▪ 내부통제 결함, 횡령 등의 범죄행위, 시스템 오류 등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차이, 자금조달원의 변동
법률위험(Legal Risk) ¹⁾	▪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이나 규제상의 변경 및 쟁점에 대한 대비 실패
평판위험(Reputation Risk)	▪ 시장에서의 평판하락이나 부정적 여론

주: 1) 분류자에 따라 운영위험에 포함시키기도 함.

운영위험이란 내부과정, 인력 및 시스템의 부적절성 및 실패로부터 야기되는, 또는 외부적인 사건의 결과로 야기되는 직간접적인 손실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형태의 운영위험은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운영위험은 거래활동에 있어서 매우 높을 수도 있다.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과는 달리 운영위험은 다국적기업의 내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위험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위험 중의 한 가지가 개발위험(development risk)이다.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은 그들의 업무에 필수적인 IT 및 통신시스템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개발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개발을 완료한 때에 그 시스템이 필요없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3) 위험의 측정 및 관리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면서 감수하는 위험의 정도는 각 거래점의 소득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서 <표 II-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의 종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 위험은 LGD, EAD, Credit VaR, Market VaR, CSA 등에 의하여 측정되고, 유동성 위험의 관리는 ALM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8> 국내은행의 위험측정시스템 운영 현황

측정대상	시스템	내용
신용위험	신용평가시스템 (개인여신, 기업여신)	차주 등급결정 여신 등급결정
	LGD ¹⁾ 측정시스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부도시 손실률 측정시스템
	EAD ²⁾ 측정시스템	부도시 익스포져 산출시스템
	포트폴리오 신용위험	Credit VaR ³⁾ 측정 및 관리
시장위험	유가증권 평가	유가증권 공정가액 평가
	시장위험 측정	Market VaR ⁴⁾ 의 측정, 관리
금리/유동성 위험관리	ALM ⁵⁾ 위험 측정	금리/유동성 위험의 측정, 관리
운영위험	운영위험 측정	CSA ⁶⁾ 의 수행과 운영위험량의 측정
종합위험	RAPM ⁷⁾ /한도관리	-위험의 통합관리 -자본배분, 성과측정

주: 1) LGD(loss given default) : 부도시 손실률(=1-회수율)

2) EAD(exposure at default) : 부도시 익스포져 금액

3) Credit VaR : 내부모형에 의해 측정된 신용위험량

4) Market VaR : 내부모형에 의해 측정된 시장위험량

5) ALM(asset & liability management) : 금리 및 유동성위험의 관리

6) CSA(control self assessment) : 개별 업무담당자가 담당업무에 대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체제

7) RAPM(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 영업활동별로 위험을 감안한 성과평가 체제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2004)

나. 다국적 금융회사의 3가지 조직 유형

글로벌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은 자회사 또는 지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회사 거래활동의 조직 유형은 보통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i) 통합거래모델(integrated trading model) ii) 중앙집중형 관리모델(centralized product management model) iii) 분리기업모델(separate enterprise model)⁹⁾.

통합거래모델은 한 기업그룹에 있어서 「장부(book)」를 작성하여 일반적으로 런던, 뉴욕 및 동경 또는 홍콩의 3개 지역간에 시장이 열려 있는 곳으로 그 거래거점을 이관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거래거점의 트레이더가 자기 판단하에 매매하고, 다음 장이 열리는 곳으로 관리를 이관하여 24시간 거래하는 방식이다.

당해 금융그룹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전체적인 거래제한기준을 설정하고, 각 거래에 대한 관리제한은 하지 않는다. 장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의 소유권은 그룹 내의 한 개 법인이 관리거점의 이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한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주로 통화옵션을 이러한 방법으로 거래한다.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은 1개의 금융상품의 위험과 관리를 1개소의 거래거점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영국국채는 런던지점이, 미국국채는 뉴욕지점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어느 지점이 관리할 것인가는 시장유동성, 헤지 가능성, 경쟁, 사업전략, 고객의 소재, 전문가의 유무 등 사업적 측면에서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거래거점은 당해상품의 거래에 있어, 다른 거래거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른 거래거점에서 행한 거래의 결과는 주거점으로 이전된다. 주거점이 아닌 일반 거래거점은 독자적으로 가격결정을 한다든지, 거래를 할 수 없다. 유가증권의 현물거래는 이러한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에 의한 경우가 많다.

분리기업거래모델에 있어서는 각 거래거점이 자회사이건, 지점이건 독립기업같이 행동한다. 각 거래거점은 각각 자신의 장부를 가지고 있다. 각 거래거점 상호간의 거래도 이루어진다. 당해 금융그룹 내의 중

9) 이러한 분류는 1998년 OECD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이다.

양 위원회는 전체적인 거래제한기준을 설정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각 거래거점은 자유로이 거래를 행한다. 은행이 행하는 통화 현물(spot) 및 선도거래는 이러한 분리기업거래에 의한 것이 많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모형이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은 적고, 그 변형 또는 혼합형태로 존재한다.

다. 기능별 분류

금융회사 내의 각 부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각 부서가 트레이딩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살펴보아, 그 기여도에 따라 거래에 의한 이익의 귀속 및 양적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부서들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다. i) 판매담당자(sales personnel 또는 marketer) ii) 트레이더(trader) iii) 경영 및 보조업무(management and supporting). 국제거래에 있어 트레이더가 가장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이며, 경영 및 보조업무는 다시 i) 재무(treasury) ii) 회계/상품 관리(accounting/product control) iii) 시스템 개발/무형자산(system development/intangibles) iv) 신용(credit) v) 기타 지원기능(other support functions)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판매 및 마케팅 기능

일반적으로 판매 및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과의 모든 접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스태프들은 보통 특정한 지역별로 배치되며 그 지역 내에서 특정한 산업의 고객들에 대해 전문화된다.

판매 및 마케팅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 및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레이더들과는 구별되며, 일부 마케터들은 가격과 거래승낙의 최종 책임이 트레이더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과의 거래시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 거래에서 마케터(marketer)는 전문적인 판매 스태프(dedicated sales staff)를 의미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트레이더의 거래를 원활하게 돕는 역할도 한다. 가격의 결정은 트레이더들이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고객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트레이더가 설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고객들과 가격협상을 빈번히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한 거래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마케터들은 트레이더로부터 지침가격(indicative prices)을 취득하게 된다. 고객들과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마케터들은 트레이더로부터 최종가격을 받게 되고 그 가격이나 그 보다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딜러 스프레드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2) 트레이딩

글로벌 트레이딩은 시장을 조성하고 고유 포지션(position)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는 이러한 모든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마케터에게 지침가격과 최종가격을 제공하는 트레이더는 그 거래에 따른 시장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트레이더의 결정권은 금융회사에 의해서 부과되는 시장위험제한에 의해서 다소간 제약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위험의 정도를 추정하여 트레이더의 거래범위를 제한한다. 이와 같은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추정은 일반적으로 거래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경영그룹(administrative group)에 의해서 재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또한 운영위험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기도 한다.

3) 경영 및 보조업무

‘Front office’라고 규정되는 마케터와 트레이더는 금융회사 내의 수많은 다른 부서에 의지하게 된다. 일부 다국적기업에서는 마케팅팀에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영업, 법률, 회계 및 조세취급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그룹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전통적으로 ‘back office’ 기능의 범주에 속하여 왔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현재 신용, 회계 및 제품관리, 전략적 위험관리, 연구 및 무형재 개발 등과 같은 ‘middle office’ 기능이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back office’ 기능으로부터 분리하기도 한다.

대부분 지원기능의 영업 원동력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히 front office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지원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곳에서, 중앙집권화를 지향하고 있다. 거래 및 위험관리기능이 중앙집권화된 중앙상품관리모델에서조차 백 오피스 기능이 더 낮은 지역비용(local costs)의 장점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집중될 수도 있다.

① 재무(Treasury)

재무담당자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지급의무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많은 금융회사에서는 재무기능(Treasury function)을 독립이윤센터와 같이 간주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관리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트레이더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무 담당 트레이더는 금융회사의 외부자금 조달비용과 이자와의 차이 및 다른 거래 장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간의 차이에 의해서 측정된 이윤을 토대로 보너스를 받게 된다.

② 운영위험관리/회계/상품관리

(Operational Risk Management/ Accounting/ Product Control)

운영위험을 관리할 기본적인 책임은 사업 책임자(business line head),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상품매니저(product manager)에게 있다. 위험관리자, 위험위원회, 내부감사와 같은 내부 모니터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금융관리자, 최고정보관리자와 같은 또 다른 내부 의견청취자들도 모두 중요하다.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운영위험을 감시할 수 있다.

회계 담당부서는 금융회계 및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그리고 거래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화된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일거래수익 및 시장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일을 포함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산출한 보고서와 매일 거래과정에서 들 어간 거래표(trade tickets)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상품관리능력의 존재는 폭발적인 글로벌 트레이딩,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글로벌 트레이딩을 촉진시켜 온 복잡한 거래 및 위험관리 전략의 개발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만일 상품관리기능이 거래기능과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면 과거의 금융사고들을 돌이켜 볼 때 그러한 손실들을 보다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③ 시스템 개발(Systems Development)

글로벌 트레이딩 운용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제품평가, 신상품 개발, 거래진행 및 완성, 포트폴리오의 실시간 위험관리, 기업회계 및 기장 등은 모두 정교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사용에 의존한다. 많은 경우 금융회사는 이와 같은 상이한 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는 독점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컴퓨

더 전문 스태프를 유지하고 있다.

④ 신용(Credit)

신용담당부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신규고객을 분석하고 적절한 신용 한도를 설정하는 것, 특정한 거래기간 동안 신용위험을 모니터하는 것, 포트폴리오 집중도를 설정된 신용한도와 비교하여 총체적인 신용위험을 검토하는 것 등이다. 많은 금융회사들은 특정한 상대방(counterparty)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신용위험을 모니터하고 범세계적 위험 정도를 설정하는 중앙집권적 신용부서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신용 제한 설정과 모니터링은 고객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품별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제시된 상품과 특정한 고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는 본점 차원에서 수행될 수도 있으며, 특정한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최근의 추세는 신용위험에 대한 보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스왑 및 파생상품협회(ISDA: International Swap and Derivatives Association)의 표준스왑문서는 마스터계약하에서 이행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상호간의 신용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신용지원 부속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으로서 청산소를 이용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인도지급(delivery versus payment: DVP) 동시결제제도의 채택도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더욱 낮춰준다.

III. 국제금융소득과세에 대한 OECD의 논의

고정사업장이란 한 기업이 외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사업의 근거지로서 원천지 과세원칙하에서 원천지 과세당국이 그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념으로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협정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거래에 따른 소득을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원칙에 대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내법들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모델조약 제7조에 대해서도 그 해석에 있어 회원국간에 일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¹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점을 도출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OECD에서는 재정위원회 산하의 제6작업반(Working Party No. 6)을 중심으로 동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동 논의는 크게 4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주로 다루고¹¹⁾, 제2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은행의 국제영업에 따른 소득배분의 문제를 다루

10)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국제조세제도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홍범교·안중석(2001), 홍범교(2003)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OECD, Discussion Draf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art I(General Considerations), CTPA/CFA(2004)74/CONF, 09-Jul-2004.

고 있다²⁾. 한편 제3부에서는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24시간 베이스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에 의한 소득의 분배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³⁾. 제4부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보험분야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⁴⁾. 제1부와 제2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3부는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제4부는 아직 논의가 많이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동 작업은 2005년 초에 완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의 OECD Newsletter에 의하면 동 작업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본장에서는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OECD Part III⁶⁾ (Global Financial Trading)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서 정책과제와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⁷⁾.

12) OECD, Discussion Draf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art II (Banks), CTPA/CFA/WP6/TP(2004)9/CONF, 16-Aug-2004.

13) OECD, Part III: Special Considerations for Applying the Working Hypothesi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Enterprises Carrying on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DAFFE/CFA/WP6(2003)2/CONF, 05-Feb-2003.

14) OECD, Part IV: Revised Note on Special Considerations for Applying the Working Hypothesi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Insurance Companies, DAFFE/CFA/WP6(2001)16/CONF, 12-Dec-2001.

15) OECD website, "Attribution of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Revised Timetable for Completion"

16) OECD, Part III: Special Considerations for Applying the Working Hypothesi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Enterprises Carrying on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DAFFE/CFA/WP6(2003)2/CONF, 05-Feb-2003.

17) '거래'라는 우리말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관계로 이하에서는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의미하는 trading, marketing, global trading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1. 배경

198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의 움직임, 국제화, 신상품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자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의 개발에 있어서도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즉 수동적인 자금의 중개기능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또는 고유계정의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오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제고시키는 행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것은 파생상품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요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파생상품 등을 통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회피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제에 있어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이용자와 공급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부각시켰으며, 금융회사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업형태와 소득의 성격 등에 따른 국제조세상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즉 국제조세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인 ‘독립기업가 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24시간 기반의 국제금융거래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특히 2개 이상의 과세관할권에 걸쳐 영업을 하는 국제금융회사들의 영업에 대한 이전가 격적용문제와 고정사업장이 연관된 경우, 소득의 배분문제가 논의의 대상이다.

2. 국제금융거래

가. 대상 금융거래 및 주체

본 보고서에서 대상으로 삼는 글로벌 트레이딩은 24시간 기반하에 시장조성(market-making)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비록 같은 시간대에 속하는 국가일지라도 1개 이상의 과세영역에 속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통화, 채권, 주식,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24시간 거래되고 있는데, 일부 통화와 파생상품이 가장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주식이 가장 지역적으로 거래된다고 하겠다.

글로벌 트레이딩의 주체는 주로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회사가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들 기관은 OTC 시장에서는 주로 딜러로서 시장에 참여하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주로 브로커로서 참여한다. 투자자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관들은 당연히 안정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모 회사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OTC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AAA급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자회사로 하여금 파생상품시장 조성자가 되도록 한다든지 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여 파생상품거래에 종사하기도 한다.

나.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OECD에서는 독립기업가격원칙의 적용을 위한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과 실무분석(factual analysis)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인적기능(people function)과 자본 및 위험부담의 역할을 나누고, 이들의 공헌도에 따라 소득을 귀속

시키게 된다. 먼저 인적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인적 기능(people function)

① 판매 및 마케팅

판매 및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들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이러한 스태프들은 특정 지역별, 산업별로 고객들에 대해 전문화된다. 이와 같은 전문화가 그들로 하여금 특정한 금융수단들의 사용을 통해 강조될 수 있는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기능과는 대조적으로 업계의 동향은 판매 및 마케팅 기능의 분산화를 꾀하고 있다.

판매 및 마케팅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거래 및 가격책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레이더들과는 구별되며, 가격과 거래승낙의 최종 책임이 트레이더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할이 제한적이다.

일부 형태의 글로벌 트레이딩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판매기능만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은 아마도 운용위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판매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험을 인수할 수가 없다. 반면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의 구성 및 고객과의 거래조건 협상과 같은 작업에 동참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능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판매 및 마케팅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위험 인수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마케터가 아니라 트레이더라는 점이다.

마케터들은 트레이더를 대신하여 그들이 설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고객들과 가격협상을 빈번히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한 거래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마케터들은 트레이더로부터 협상 가격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되고, 고객들과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트레이더로부터 최종가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가격이나 그 보다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딜러 스프레드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트레이더의 최종가격 그 이상으로 거래를 성립할 수 있는 정도는 고객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마케터의 중요한 공헌도 중의 한 가지는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특정한 시간대에 있어서의 소매수준에서는 하나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더욱 그 폭이 좁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의 마케터의 역할을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② 트레이딩과 일일 위험관리

글로벌 트레이딩은 시장조성(market making)과 고유 계정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마케터는 사업의 거래측면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트레이더는 이러한 모든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마케터에게 지침가격과 최종가격을 제공하는 트레이더는 그 거래에 따른 시장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트레이더는 헤지되지 않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거래이윤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관의 위험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설정되어진 위험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의해 발생된 궁극적인 위험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이윤이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일단 위험이 적절한 장부에 계상되면 트레이더는 해당 금융기관이 용인하는 시장위험의 수준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한다. 거래기간 동안 트레이더는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종합적인 시장위험을 헤지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위험에 대하여 헤징을 하

게 된다.

트레이더는 헤지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에서의 나머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예상되는 시장변화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에 동결거래를 통해 자신의 장부에 있는 기존의 수익을 동결시키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트레이더의 결정권은 금융기관에 의해서 부과되는 시장위험제한에 의해서 제약되는데, 현재 대규모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적어도 일일 기준으로 시장위험을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계산은 일반적으로 거래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경영그룹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트레이딩에 대한 중요한 통제이며, 운영위험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기도 한다.

2) 자본 및 위험부담

기능분석은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어떠한 자본이 이용되며, 어떠한 위험이 인수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빼놓을 수 없다. 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트레이딩 기관도 물리적인 사업장, 통신 시스템, 컴퓨터와 같은 물적 자산을 이용한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다국적기업 금융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통신시스템을 구성하며, 제3자 고객에 의한 접속 및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인 독립기업에게 통신시스템을 아웃소싱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이 사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기능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트레이딩 부문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무형자산은 글로벌 트레이딩 기관의 사명, 평판, 상표 또는 로고 등의 마케팅 무형자산이다.

또 다른 무형자산은 금융상품의 가격결정, 전망, 자본분배, 다양한 위험의 측정, 모니터링,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용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같은 제조용 무형자산이다. 글로벌 트레이딩에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한편, 글로벌 트레이딩의 핵심은 위험에 대한 인수와 지속적인 관리이며, 이는 기능분석 및 비교분석을 행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능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며 최근에 운영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전가격

가. 일반적 원칙

위에서 살펴본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은 트레이딩 및 마케팅과 같은 글로벌 트레이딩의 상이한 기능의 상이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로벌 트레이딩 차원에서 세심한 기능분석의 수행은 광범위한 중요 기능들이, 인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위험의 다양성, 다양한 기능 수행의 세계적 전파, 사업구조 및 조직의 다양한 변화 등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일단 기능분석이 완성되면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를 규정하고 그들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집중형 관리모델과 분리기업모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앙집중형 모델의 경우, 핵심적인 위험관리 기능이 다른 마케팅 기능과는 분리되어 한 군데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능 가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기능들은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서비스의 기능으로서 제공받을 것이고, 이 경우 비교할만한 시장 DB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기업모델의 경우에도 기능이나 위치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통합거래모델의 경우에는 이익분할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핵심적인 기능이 여러 거점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마땅한 비교가능 가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글로벌 트레이딩의 분석

특수관계기업간에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종류를 살펴보고, 거래와 관련된 기능의 역할이 적절하게 고려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판매 및 마케팅

기능분석에서 한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관련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보상(reward)의 규모와 형태는 제공되는 서비스, 특히 상품형태, 수행되는 기능, 인수되는 위험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의 수준에 달려 있게 된다. 판매 및 마케팅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기능의 수행이 신용위험 인수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일부 시장위험의 인수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예를 들면 일부 일반 판매담당자는 단지 표준화된 상품과 관련된 브로커(broker)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판매거래로부터의 어떠한 신용위험도 인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특정한 거래의 수익성과는 관련이 없는 수수료나 커미션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극단적인 한편에서 일부 마케터들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으며, 상품설계 및 개발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신용위험의 인수를 유발하게 되며, 시장위험 인수를 유발하는 일부 트레이딩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트레이딩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그들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기능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

지 극단적인 마케터들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마케터들은 단순한 브로커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신용위험을 인수하지만, 상품설계에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막대한 시장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된 담당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확한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일반적인 판매기능이라면 시장데이터가 유용하게 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커미션의 형태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CUP)이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독립기업가격 총이윤에 도달하기 위해 재판매가격(resale price)방법을 이용하여 판매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계약상의 조건에 의한 분석에 기초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에서 각각 인수되고 감수하는 위험들에 대한 세심한 비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케팅 담당자에 의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는, 일정 환경하에서, 트레이더가 고객과 거래를 할 때의 가격과 마케터에 의해 실제로 취득되는 가격간의 차이를 참조하여 측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트레이더와 마케터에게 귀속되는 보상이 각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특히 인수된 위험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거래설계에 있어서 트레이더와 밀접한 협력을 하는 전문화된 마케터가 고용된 경우, 납세자는 이윤 추구과정에서 마케터의 공헌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익기준방법(profit method)을 선택하여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기준방법이 독립기업가격원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교분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독립된 당사자로부터의 비교데이터가 유용한 경우 더욱 용이할 것이며, 자신들의 담당 역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당사자 행동을 참조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도로 전문화된 마케터들은 자신들이 거래설계의 모든 측면에서 깊숙하게 관여하였다면 초기의 딜러 스프레드와 차후의 거래

이윤을 합한 총액에서의 배당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트레이더와의 통합과 협력의 수준은 각 당사자 보상을 위한 보너스 보상구조, 업무관계 및 과정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트레이딩 및 위험 관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트레이딩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기능별 분석은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가 사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이윤추구행위 중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트레이딩 행위 자체가 차후의 거래이윤을 발생시키는 마케팅/딜링 기능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더구나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기능은 인수된 시장위험의 관리 및 그에 따른 자본요건에 따라 차후에 거래이윤이나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전통적 거래기준방법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독립기업모델(separate enterprise model)로 구성될 때, 즉 각각의 지역은 모든 거래활동과 관련하여 독립된 법적 실체(legal entity)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 경우 각 기업은 개별적으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특수관계자(associated enterprise)와의 거래는 서비스 제공이나 금융거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거래에서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들과의 비교거래의 유용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 지역의 적정한 이윤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거래기준방법 이외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독립기업거래모델에서는 하나의 거래지역이 또 다른 거래지역과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법인에 속하는 거래지역간의 금융거래(특히 헤지거래)가 발생하는 일부 상황에서 독립된 트레이더가 이러한 거래를 체결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거래지역간의 내부거래에서 기대되는 딜러 스프레드가

(-)이거나 또는 거래지역의 관점에서 금융거래에 대한 순현재가치(NPV)가 (-)라고 한다면 거래를 둘러싼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거래지역의 영업전략과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순수한 중앙상품관리모델에서의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기능을 평가하는 데에는, 중앙거래지역이 트레이딩과 헤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많은 사례에서의 기능별 분석은 핵심적인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기능이 중앙상품관리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 독립된 당사자간의 트레이딩 및 헤지거래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활동에 따른 이윤을 받게 되며,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의 특수 거래는 트레이딩보다는 판매 및 지원기능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복잡한 거래활동이 중앙지역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거래구조 구성이 순수한 중앙상품관리모델에서 벗어나 통합거래모델 쪽으로 가까워지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지역을 벗어나서 수행된 트레이딩 기능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제기하게 된다. 또한 위험관리가 거래지역과는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중앙지역의 통제하에서 제한된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활동의 일부가 수행되기 시작한 지역이 여전히 전체이윤의 몫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수료와 같은 전통적인 거래모델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해결책은 사실과 환경에 기초하여, 특히 그 지역이 시장위험의 인수와 관리를 유발하는 트레이딩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완전한 기능별 분석 및 실무 분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이 순수하게 야간에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위험인수기능의 기여로 인해서 그 지역은 독립기업간에 수행된 거래이윤의 몫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독립기업모델에서와 같이 통합거래모델에서는 각 지역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통합거래모델에서의 차이점은 특별한 제3자 거래와 관련한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기능이 지역간에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거래에 따른 총이윤이 모든 지역에서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된 형태의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는 독립된 기업간에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적정하고 정확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또한 통합거래모델에서는 성공적인 거래체결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지역과 협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거래기준방법이 신뢰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이윤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실 실질적인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의 운영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 모델 중 한 가지에 완전하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것이지만 다른 측면들을 포함하게 된다. 더구나 글로벌 트레이딩이 수행되는 방식이 사업의 진전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상품이 원래 본점이 있는 나라 외부에서 완전한 통합기준하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거래주도권이 위임되거나 본국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모델의 거래/위험관리 구성의 수준보다는 실무 및 기능별 분석, 특히 시장위험을 인수하기 위한 일일 의사결정이 수행되는 지역에서의 실무 및 기능별 분석에 반드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지원기능

OECD 지침에 따르면 지원 및 미들오피스(middle office), 백오피스

(back office) 기능을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거래기준방법이 신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활동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전형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들 모든 기능들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발견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결산(settlement)과 같은 많은 지원기능은 독립 당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비교적 손쉽게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수행된 기능 및 인수된 위험의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원 및 백오피스 기능의 분산 및 아웃소싱 경향도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백오피스 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글로벌 트레이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글로벌 트레이딩의 주요 활동과는 동떨어져 있기도 하다. 상품관리 직원(product control staff)과 같은 백오피스 스태프는 전체적인 운영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역할- 예를 들면 운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은 이들 스태프의 공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서 유용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활동의 공헌도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측정수단은 핵심적인 스태프에 대한 보상규모이다.

시스템과 무형재 개발에 있어서의 지원 스태프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히 가치가 매우 높고 유일한 무형재가 포함된 개발을 하는 때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원가가산법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글로벌 트레이딩에서의 지원 스태프의 역할은 때때로 다른 산업에서의 계약에 의한 연구자(contract researcher)의 역할과 비슷할 것이므로 원가가산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백 오피스, 미들 오피스 또는 지원(support)의 역할로 수행되어지는

광범위한 기능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활동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케이스별 기준(case-by-case basis)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기능의 본질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기능을 위한 독립기업가격에 도달하기 위해 전통적인 거래기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 거래이윤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

1) 이용될 수 있는 거래이윤법의 형태

전통적인 거래 기준법이 이용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거래이윤법(또는 이윤기준법)으로 이익분할법(profit-split method)과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을 들 수 있다.

이익분할법은 거래의 총수익 또는 순수익을 관련 회사간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또는 관련 회사간의 기본 기능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 후 남은 이익에 대하여 배분하는 형태(residual analysis)를 취하기도 한다. OECD 지침에서는 이익분할법만을 인정하고, 단일기업과세방식(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¹⁸⁾.

이익분할법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관련국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예를 들면 실현기준, 발생기준, 시가기준 등) 과세이익을 계산할 때, 통합이익(combined profit)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 ② 어떠한 수입(revenue)이 분할 대상이익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가장 일반적인 예로서 회계장부(treasury book)에 기록된 이자나 잉여 현금투자로부터의 수익, 헤지거래의 손익 등을 대상이

18) 이 점에 대해서는 뒤의 제IV장 및 제V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익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 ③ 이익분할의 적용대상을 총이익으로 할 것인가, 순이익으로 할 것인가? OECD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합리적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익 분할법의 적용

이익분할법에 있어서는 보상받아야 할 기능을 판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잔여분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들은 이미 잔여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잔여이익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기능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기능이 판별되면, 각 기능에 대하여 기여도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로 각 기능에 대하여 각 거점이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모든 이전가격문제에서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기여도를 고려하는 데 있어 사용된 자산과 감수한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대표하는 요소를 선정하여 그 요소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multi-factor formula). 이하에서는 다중 요소 공식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¹⁹⁾.

① 이익 창출에 기여한 기능의 판별

‘트레이딩과 위험관리’, ‘마케팅’ 등의 중요 기능에 대한 판별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조활동’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거래기준 방법이 적용되

19) 이 방법은 결국 단일가격제도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기도 한다. ‘인적기능(people function)’ 뿐 아니라 ‘자본’ 기능에 대한 보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수익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설계와 거래에 관여된 마케터들만 보상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다른 마케팅 기능은 이미 서비스 수수료나 커미션(딜러 스프레드) 등을 통하여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기능의 판별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능을 대표할 요소(factor)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트레이딩과 위험관리는 ‘front office factor’로 한꺼번에 나타내어지는데, 이들은 마케터와 트레이더 및 위험관리자에 대한 보수로써 측정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분리된 다른 요소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거점에 따라 위험의 감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여러 가지 요소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② 가중치의 부여 - 기능의 기여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보상이 요소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요소에 주어지는 가중치는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익분할법에 의한 결과가 독립가격원칙에 부합하고, 단일기업과세제도에 의한 방법과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중치의 부여는 경제분석에 근거하고, 가능하면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하든지 독립적인 주체가 어떻게 이익을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외부 벤치마크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환경, 상품의 성격, 사업 전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 내부에서 각 기능에 대한 보상자료 등이 있다면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요소의 측정 - 각 거점의 상대적인 기여도의 결정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여러 거점이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말할 필요없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인적기능'에 대하여 각 거점에서 마케터, 트레이더, 위험관리자들의 보수를 비교하여 이들 거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의 '인적기능'은 이익창출에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이들 인력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다른 회사 등으로 전직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 수준은 매우 경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성과와 관계없는 보수는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한 가지 요소에 의하여 대표되어질 때는 문제가 있다. 이 한 가지 요소가 예를 들어, 보수에 의하여 대표된다면, 보수와 다른 기능들이 기여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보수와 성과간의 일정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기능에 대한 각 거점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각 거점의 거래량(명목계약액이나 거래건수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환율에 의한 차이나 상품의 성격에 의한 차이(예: plain vanilla형은 보다 복잡한 상품에 비하여 거래량은 많으나, 마진은 적다든지 하는 경우) 등이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가 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로써 쓰일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문제이다. 또 하나는 지리적 차이에 의한 변수이다. 즉 보수는 생활비용, 지역적 고용조건, 사업관행 등에 따라 성과와 관련 없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안별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사용 자산과 부담 위험

‘자본’의 기여도에 대한 적절한 이익의 배분방식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관련 회사에 의하여 자본이 공급되었을 경우에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기여도에 대한 측정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적기능과는 달리 보수에 의하여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배분모델(capital allocation models)이나 Capital VaR과 같은 내부자료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최종적인 것은 역시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과 위험부담은 이익의 배분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4.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문제

가.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활동 및 조건의 결정

1) 기능, 자산, 위험의 고정사업장에서의 귀속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을 통한 글로벌 거래에 있어 자본과 위험을 하나의 법인체하에서 분리하기 곤란하다. 이 경우 기능분석 및 실무분석을 통하여 위험을 먼저 배분하고, 동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두 개 이상의 거점에서 위험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거점에서 이루어진 기능의 성격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신상품의 개발에 있어 한 거점이 위험분담은 하지 않고, 개발에 기여하였다면 그 거점은 단순히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중앙집중관리모형에 있어 마케팅은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쉬운 각 거점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위험관리는 중앙거점

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거점과 지역간에 마케팅이나 트레이딩/위험관리 기능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합거래모형에 있어서는 모든 기능이 원래 거점마다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거점간의 거래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거점간의 기능의 분할뿐 아니라 통합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능적 분석은 각 기능간의 통합 정도에 대한 분석도 수반하여야 한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능분석에 있어서 사용자산과 부담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무형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노하우라든지 위험관리시스템과 같은 무형자산이 하나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되었고, 그러한 무형자산이 다른 거점에서 개발되었다면 동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동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고려한 가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2) 신용도의 고정사업장에서의 귀속

고정사업장의 신용도는 모기업의 신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며, 일부 예외의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산, 위험 부담 등의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제3의 기업과 동일한 신용도를 부여한다.

3) 자본의 고정사업장에서의 귀속

정상가격의 산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을 고정사업장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제 목적으로는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자본을 귀속시킬 필요는 없으나, 과세를 위한 이익배분을 위해서는 이미 언급된 방법에 따라 자본의 일정부분을 고정사업장에 귀속시켜야 한다. 특히 'free capital'은 '자기자본'의

개념으로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세부담 능력을 결정짓는다²⁰⁾

① 'Free capital'의 귀속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체 내에서 자본과 위험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free capital을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의 측정은 은행들이 취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일단 위험의 측정이 이루어지면 위험도에 따라 free capital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그 방법은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을 따른다.

(i) Capital allocation 방식은 고정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가중 자산의 비율에 상응하여 그룹 전체의 free capital 가운데 동일 비율만큼을 귀속시키는 방식이고, (ii) Quasi-thin capitalization/regulatory minimum capital 방식은 고정사업장을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보았을 때, 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규모 이상의 free capital을 귀속시킨다. (iii) Thin capitalization 방식은 고정사업장을 비슷한 조건에 놓인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독립 금융회사로 보고 free capital을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일귀속방식을 찾기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방식들이 정상가격 결과를 가져오는 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0) 일반적으로 equity 자본에 대해서는 세제상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debt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된다. 'Free capital'이란 세무상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수익을 받는 자본을 의미한다.

② 'Free capital' 이외의 자본의 귀속

은행들은 그들의 규제자본에 free capital만이 아니라, 후순위채와 같은 중간적인 성격의 자본을 포함시킨다.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고정사업장이 적절한 양의 이자비용을 고려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금융그룹의 한 거점에서 전체 그룹을 위하여 2종(tier 2) 후순위채를 발행하였을 경우, 당 거점이 동 발행에 대한 모든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경우에도 자본을 귀속시키는 방법은 은행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의 귀속 결정

특수관계자간의 고정사업장관계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면,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의하여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거래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계산한 이익을 고정사업장에 배분한다. 여기서는 특이한 경우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거래의 인정

거래 이익의 배분에 앞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여야 한다. OECD 지침에서는 주식의 물리적 이전, 서비스의 제공, 무형자산의 사용, 금융자산의 이전과 같은 '실질적이고 판별할 수 있는 사건(real and identifiable event)'이 발생한 경우에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계약상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물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거점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품의 개발, 관리와는 관계없는 거

점에서 '장부'상에 관리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격은 내부거래를 자유롭게 하여, 이익의 배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상품과 위험은 그것이 단순히 '기장'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곳에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중요한 기능의 이전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독립기업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일상적인 상업 환경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과 위험의 이전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이익배분을 위한 이전가격의 적용

일단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면 이익배분을 위한 이전가격이 적용된다. 독립기업간에 일어나는 유사한 거래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3) 글로벌 트레이딩 기능

① 트레이딩/위험관리 모형의 분석

모든 중요한 위험관리 기능이 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고정사업장에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차후 관리에 관련없는 다른 기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지원 및 하부구조의 공급과 관련된 기능, 즉 본부기능의 경우를 보자.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에서는 핵심적인 위험관리 기능이 한 곳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중심거점에 이익이 대부분 배분될 것이고, 다른 거점에는 지원 및 판매 기능에 대한 배분이 있

어야 할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합거래모형에서는 중요한 기능이 분산되기 때문에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이에 상응하는 거래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전통적인 거래기준 방식보다는 이익분할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② 자산과 위험을 다수의 거점으로 배분

금융상품이 고정사업장과 동일기업의 다른 파트에 의하여 동시에 '소유'된다면, 일단 지침에서 주어진 방안 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것이나,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OECD 지침은 이익분할법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③ 위험관리기능과 위험의 내부 전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미러스왑(mirror swap)의 예를 통하여 신용위험이 회사내부에서 어떻게 전가되고, 이에 따라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미러스왑에서 고객과 판매계약을 맺은 부서는 회사내부의 다른 부서(다른 거점)와 내부 거래계약을 맺어 다른 부서로 하여금 위험관리를 하게 한다. 이때 내부거래에 약간의 스프레드를 주어 판매부서에 대한 보상과 판매부서에서 모니터링하게 되는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을 한다. 다른 거점에서는 시장위험을 관리한다. 이러한 내부거래의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과세목적상 왜곡된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내부거래로 인한 사후적인 손익발생에 대하여 각 거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단 인정된 거래에 대한 이익의 배분은 미러스왑의 조건과 내부 스왑 지불이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많

은 수의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거래에 대하여 스프레드가 협의되는 것이 아니고, 유형에 따라 정해진 스프레드가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단순한 구조의 변동-고정 금리 스왑과 복잡한 이종통화간 지분스왑과는 상품 구성 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이 다르다. 만일 이러한 차이가 스프레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격은 정상가격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통한 글로벌 트레이딩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의 배분을 위해서도 역시 기능 분석과 자산 및 위험분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 모기업이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수수료 이외에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의 부분이 있는가? OECD는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자본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추가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IV. 국제금융거래 소득과세의 정책과제

국제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그 발생 소득이 2개 이상의 과세관할 구역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따라서 국가간에 과세권 행사를 위한 소득배분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각국의 과세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 이중과세 또는 비과세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러한 이중과세 또는 비과세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²¹⁾. 첫째, 글로벌 트레이딩은 국제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권한이 다른 나라의 거래거점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관한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면, 소득을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규정은 소득원천규정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경우,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이나 파생상품의 경우에 있어 소득원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득 원천결정방식은 소득을 발생시킨 기능이 어디서 일어났는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능이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글로벌 트레이딩이 복수의 거래거점간에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거점간의 이익배분이 대단히 곤란하다. 통합거래모델이라든가 중앙집중형 관련모델과의 혼합모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글로벌 트레이딩은 자금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지만, 자금은

21)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한 자료로서 옥무석(2004), 宮武敏夫(1998), Neighbour(1998), OECD(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의 세무조사에서 파악이 곤란하고,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는 것이 어렵다.

넷째, 일관적인 회계 및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에 있어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일정한 최소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전부를 과세하는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복수의 국가에서 이중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헤지거래는 글로벌 트레이딩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많은 기업이 순헤지(net hedge)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거래에 헤지거래를 귀속시키기 어렵다.

여기서는 제Ⅲ장에서 검토한 OECD 보고서 Part III의 내용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트레이딩 소득과 관련된 국제조세상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고정사업장의 개념

국제금융회사들은 자본충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점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다른 규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회사(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을 한다. 자회사는 특수관계인(associated enterprises)에 해당하지만, 자회사라는 것 자체만으로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지점은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업무 등에 국한될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제금융소득의 배분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충족시켰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점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정의의 문제에 있

어 준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 구매행위 자체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트레이딩과의 관계에 있어,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은 무엇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백오피스(back office) 지원활동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구매행위에 의한 고정사업장 개념의 배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 거래거점간의 통합 및 협력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구매행위가 고정사업장 개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자회사 형태로 글로벌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고정사업장의 문제가 부각된다.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 각 거래거점이 공통으로 보유하는 하나의 장부에 전체 거래가 계상되기 때문에 대리인 고정사업장의 문제가 중요하다. 고정사업장이 되는 종속적 대리인과 그렇지 않은 독립적 대리인의 구별 또한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대리인 고정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점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따른 전무 방식(all or nothing)의 과세문제와 내부 지불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대리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공헌에 합당한 이익의 배분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자회사 형태든, 지점 형태든 마찬가지로 독립기업간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소득 귀속

OECD 보고서 Part III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분이다. OECD에서도 초안으로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의 수정 방향이 주목된다.

동 문제에 대한 comment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치한다²²⁾. 즉 OECD에서는 종속대리인 기업(enterprise)을 주인(principal)으로서,

그리고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대리인(agent)으로서 보아 종속대리인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service fee)을 초과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종속대리인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자회사가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의 역할을 할 때, 원천지국에서는 두 개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다. 종속대리인기업(원천지국의 거주자)과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이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특수관계 거래로서 모델 조약 제9조의 적용을 받는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 것인가? 물론 종속대리인이 수행한 기능과 자본 및 위험부담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기능이 종속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 모기업이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상 가격에 의한 수수료 이외에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의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화되고 있다.

수수료의 크기는 기능분석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기능분석이 고정사업장이 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해당 고정사업장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부담 능력은 모기업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기능분석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위험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게 정상가격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손익의 배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속대리인의 기능에 있어서 자본과 위험부담의 크기를 간과할 위험은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최소화될

22) OECD, Comments from Merrill Lynch, BIAAC, PriceWaterhouseCoopers, Earnst & Young 등

수 있다. 즉 원천지국 과세당국이 두개의 법인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고- 종속대리인 기업과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별개로 보고- 기능분석에 근거한 이익의 배분은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된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의 배분이 기능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그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전가격지침에 의하여 계산한 종속대리인 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제하고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동 수수료는 기능분석하에서 종속대리인 기업이 모기업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위험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다(OECD Part III, 문장 256~261).

메릴린치²³⁾에 따르면 OECD의 이러한 입장은 조세피난처(tax haven)에 형식적인 자본을 유치하여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주고정사업장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즉 종속적 대리인 고정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위험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모회사에 자본이 기장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트레이딩이 대부분 OECD 회원국에 위치한 기장센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남용의 위험은 적다고 보고, 한번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모·자회사간의 이익 배분에 대하여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대형자본들이 주도하는 선진국의 국제금융업계들이 일관성 있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과 간주고정사업장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세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일단 제안되었다고 본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는

23) OECD, Comments received from Merrill Lynch-OECD Revised Discussion Draf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art III

24) 즉, 국제금융거래에서 얻는 수익을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형식적인 모회사에게 부당하게 배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천지국에 모회사를 대신하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한다.

앞으로 한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우리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소득의 귀속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국제금융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결국 세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OECD 보고서 Part III를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본 및 위험부담에 대한 이익의 귀속이 가장 많으며, 또 그것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소득의 귀속을 위하여 기능 및 실무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정상가격이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정상가격대가 도출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본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가장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정답’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자본에 대한 이익의 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업계가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헤지펀드모형과 이익기반 보상모형(PBCM)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의 배경에는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깔려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OECD 보고서 Part III에 서와는 방법론 측면에서 다른 대안이기는 하나 이들 보고서나 코멘트에서 수미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자본의 중요성과 위험관리 기능의 중요성이다. 동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제VI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가. 헤지펀드모형

따라서 메릴린치를 비롯한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헤지펀드(hedge fund²⁵⁾)모형을 원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²⁶⁾. 헤지펀드모형은 이전가격세제에 있어서 자본의 공급자와 그것을 투자하는 다른 기능을 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헤지펀드에 있어서 투자자와 운용자간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경우에 있어서 펀드 매니저에게 돌아가는 보수의 수준이 다른 관계에 있어서 유사한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레이딩 기능에 대하여 이익에 기반한 보상을 해주고, 자본제공자가 잔여 손익을 모두 취하는 글로벌 트레이딩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글로벌 트레이딩과 헤지펀드간의 유사성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 헤지펀드의 매니저와 투자자간의 계약관계는 자본에 대한 수익과 트레이딩 기능에 대한 수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많은 경우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 위험관리는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측면이 헤지펀드와 글로벌 트레이딩이 유사한 첫 번째 공통점이다. 둘째, 헤지펀드는 대개 장기투자보다는 차익거래를 노리고 이루어진다. 셋째, 헤지펀드 매니저와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출신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적자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수가 경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다양한 종류의 헤지펀드가 발생함으로써 특정 글로벌 트레이딩과 유사한 형태의 헤지펀드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다섯째, 자산운용의 대상이 글로벌 상품으로서 뮤추얼펀드와 달리 파생상품의 이용, 공매도, 복합상품에 대한 투자 등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다

25) 헤지펀드는 사적인 투자 파트너십으로서 장단기적인 투자를 주로 파생상품이나 다른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헤지펀드는 사적인 투자수단이기 때문에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6) OECD, Comments received from Merrill Lynch on the Analysis of Hedge Funds OECD, Comments received from BBA,LIBA,AFB 등

만 헤지펀드의 경우 사적인 투자 파트너십인 만큼 글로벌 트레이딩의 경우가 마케팅 면에서 훨씬 광범위하다는 차이가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대개 투자은행 출신으로서 운영수당(운영자산의 1%)과 성과급(수익의 20%)을 받는다. 운영수당은 운영비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Deloitte & Touche가 252개의 다양한 헤지펀드에 대한 자료(1998~2002)를 갖고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²⁷⁾.

- ① 인센티브 수수료는 대부분 20%이고,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과거의 손실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매니저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²⁸⁾.
- ② 시장위험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시장위험을 나타내는 베타기준), 시장위험과 인센티브 수수료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²⁹⁾.

<표 IV-1> 시장위험과 성과급

시장위험(β)	성과급
$\beta < 0.57$	
하위 사분위	20%
중앙값	20%
상위 사분위	20%
$\beta > 0.57$	
하위 사분위	19.25%
중앙값	20%
상위 사분위	20%

- ③ 자본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센티브 수수료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27) OECD, 전제서

28) 이러한 제도를 'high-water mark'라고 한다.

29) 여기서는 시장위험 지표로서 S&P 500를 사용하였다.

없이 대부분 20% 수준을 보인다.

- ④ 글로벌 트레이딩에 비유할 수 있는 보유자본 1억달러가 넘는 헤지펀드의 경우 사후적으로 투자자와 매니저 사이의 수익 배분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헤지펀드의 수익배분

투자수익	자본에 대한 배분
하위 사분위	74.57%
중양값	79.75%
상위 사분위	80%

따라서 정상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투자자들이 약 75~80%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운영자들이 나머지를 기대할 수 있다. 헤지펀드모형의 원용을 통하여 업계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와 잔여위험부담자 간의 이익 분배에 대하여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윤기반 보상방식

메릴린치가 제시하는 또 다른 수익의 귀속 방법으로 ‘이윤기반 보상 방식(Profit Based Service Fee Method 또는 Profit Based Compensation Method)’을 들 수 있다³⁰⁾. 메릴린치의 의견으로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방식(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등)은 거래자간의 판별할 수 있는 거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글로벌 거래의 손익을 배분하는 데 적용하기 어렵

30) OECD, Comments received from Merrill Lynch-OECD Revised Discussion Draf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art III.

다고 본다. 즉 비거래 모형(non-transactional model)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³¹⁾. 이익분할법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헤지펀드 방식(profit based trader compensation method)이나 이윤기반 보상방식(PBCM)이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모델은 새로운 종류의 이익분할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이전가격방법은 비교가능한 제3의 방법을 찾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집합적인 고객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배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또한 기존의 이익분할법도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손실분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들의 규제가 관계회사에 기장된 손실을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손실을 나누게 하는 것은 파트너십 관계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들은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오는 모든 잔여 손익을 자본 제공자에게 지불하고, 다른 참여자는 수수료나 이익에 기반한 보수를 받게 한다.

PBCM은 자본의 제공자가 글로벌 거래에 대한 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참여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익에 기반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참여자들이 규제에 의하여 손실에 대한 배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동 모형은 적절하다. 트레이딩 기능은 이익에 기반하여 보상하고, 기능제공자가 여러 군데 있을 경우에는 그들끼리 가중 인원수(weighted headcount)나 트레이더 보수(trader compensation)에 의하여 배분한다. 마케팅 기능도 판

31) 비거래 모형이란 둘 이상의 법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자본, 거래, 상품디자인, 마케팅-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위험을 헤지하는 모델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참여법인간의 거래를 독립적으로 판별(separately identifiable)할 수 없다. 즉 한 법인이 상품을 다른 참여법인에게 팔고, 그것이 최종수요자에게 재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노력의 결과로 생기는 손익이 서비스 수수료의 형태로 분배되는 것이다.

매 커미션 또는 트레이더와 유사하게 이익기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윤기반 보상방식(PBCM)의 예】

미국 증권회사의 자회사로서 UKCo.와 USCo.(이하에서 UK와 US로 표기)가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으로 글로벌 딜링을 하고 있는 예를 보기로 하자.

- US가 전체 고객을 상대, 거래에서 나오는 수입 \$2,000을 장부에 기장
- US는 지원부서(back office) 운영에 \$100 지출, 내부회계에 의하여 \$500의 채고비용(cost of carry) 부과
- US는 2명의 선임 트레이더 고용(비용 \$70), 3명의 마케터 고용(비용 \$30)
- UK는 4명의 선임 트레이더와 8명의 주니어 트레이더를 \$300에 고용, 7명의 마케터를 \$70에 고용
- 백오피스 기능은 (비용+10%)의 비율로 보상
- <대안 A>에서 마케터들은 상품 디자인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마케팅 기능은 정상가격 커미션에 의하여 보수를 받음.
- <대안 B>에서 마케터들은 상품 디자인에 종합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익에 기반한 보수를 받음.
- 거래 기능은 양 대안에 있어서 모두 이익에 기반한 보수를 받게 되고, 자본의 공급자에게는 모든 잔여 운영이익이 배분됨.

<대안 A>

- 백오피스 기능에 배분된 보수는 \$110(=\$100의 110%)
- 참여자들이 마케터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 마케팅 기능에 대한 정상가격 커미션이 총수입의 10%인 \$200로 결정
- 동 금액을 UK와 US사이에 인원수에 따라 \$140 : \$60로 분배

- 거래기능은 비용이 보전되고, 이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분배 (US는 UK에 대하여 트레이딩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300 지불)
- 트레이더에 대한 이익 기반 보수 비율은 40%로 결정: 이 경우에 남는 이익은 \$820(\$2,000에서 \$110(백오피스), \$200(마케팅), \$370(트레이딩 비용), \$500(재고비용) 차감)
- 따라서 \$820의 40%인 \$328을 트레이더 기능에 분배
- 동 액수를 US와 UK에 인원수에 따라 배분(선임에 대한 비중을 주니어에 대한 비중의 1.75배로 하면 결과적으로 US는 3.5명을 고용하고, UK는 15명의 트레이더를 고용하는 셈)하여 \$328은 US에 \$62(=\$328×3.5/18.5), UK에 \$266(=\$328×15/18.5)로 배분

<표 IV-3> 대안 A의 결과

(단위: \$)

정상가격 적용	합계	USCo.	UKCo.
지원부서 기능 보수	110	110	0
마케팅 기능 보수	200	60	140
트레이딩 기능 보수	328	62	266
자본 기능 보수	492	492	0
재고 비용(Cost to Carry)	500	500	0
트레이딩 비용	370	70	300
비용:			
재고 비용	(500)	(500)	
운영 및 지원 비용	(100)	(100)	
트레이딩 비용	(370)	(70)	(300)
마케팅 비용	(100)	(30)	(70)
최종 결과	930	594	336

- 마지막으로 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남아 있는 운영이익을 배분:

\$492

- 결과적으로 운영이익은 US에 \$554(=\$62+\$492), UK에 \$266이 분배
- 최종결과는 세전 순이익 \$930을 US에 \$594, UK에 \$336으로 분배

<대안 B>

- 백오피스에 대한 보수는 \$110
- 이 경우에는 마케팅 기능이 트레이딩 기능만큼 전체 거래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아 비용보전 외에 이익기반분배를 강조
- 그 비율을 30%로 결정(US는 \$70의 수수료를 UK의 마케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불)
- 남아있는 운영이익은 \$920(\$2,000에서 \$110(백오피스), \$100(마케팅 비용), \$370(트레이딩 비용), \$500(채고 비용) 차감)
- \$920의 30%인 \$276은 마케팅 기능에 배분: US에 \$83(=\$276×0.3), UK에 \$193(=\$276×0.7)
- <대안 A>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기능에 대해서는 40%의 이익을 배분(US는 UK에게 트레이딩 비용 보전을 위하여 \$300을 지급)
- \$920의 40%는 \$368을 트레이딩 기능에 지급: US는 \$70(=\$368×3.5/18.5), UK는 \$298(=\$368×15/18.5)
- 이 경우 자본에게 배분되는 운영이익은 \$276(=\$920 - \$276(마케팅 기능) - \$368(트레이딩 기능))
- 따라서 각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총 운영이익은 US \$429(=\$83+\$70+\$276), UK \$491(=\$193+\$298)
- 최종결과는 \$930의 세전이익을 US에 \$438, UK에 \$492로 분배

<표 IV-4> 대안 B의 결과

(단위: \$)

정상가격 적용	합계	USCo.	UKCo.
지원부서 기능 보수	110	110	0
마케팅 기능 보수	276	83	193
트레이딩 기능 보수	368	70	298
자본 기능 보수	276	276	0
재고 비용	500	500	0
트레이딩 비용	370	70	300
마케팅 비용	100	30	70
비용:			
재고 비용	(500)	(500)	
지원 부서 비용	(100)	(100)	
트레이딩 비용	(370)	(70)	(300)
마케팅 비용	(100)	(30)	(70)
최종 결과	930	438	492

4. 내부 위험전가 거래의 처리

제III장에서 우리는 미러스왑(mirror swap)의 예를 통하여 금융그룹 내부에서의 위험전가를 위한 거래를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핵심 사안은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금융그룹간에 흔히 일어나는 위험의 전가거래를 인정하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스왑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가 일어날 경우, 그러한 내부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사후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과세목적상 왜곡이 일어난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 거래별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형화(ready made)된 상품과 같이 바로 체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고정-변동 이자율 스왑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설계과정을 거치는 변동 통화스왑 등 각 상품별 특성이 거래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스프레드는 정상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OECD Part III, 문단 248)³²⁾.

따라서 OECD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그룹내부의 위험전가거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금융기업들은 현실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실질거래과세의 원칙). 금융그룹내부의 위험전가 거래가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른 거점으로 옮겨가는 것인가? 위험의 지역간 전가가 일어나면 당연히 소득의 귀속이 바뀔 것이고, 그렇다면 각국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OECD의 입장은 과세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언스트영(Earnst & Young)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 각각의 기능에 대한 이 전가격방식에 의하여 시장위험은 시장위험대로, 신용위험은 신용위험대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³³⁾.

단순히 현실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거래가 일어날 수 있으며 각국의 과세당국이 이 문제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기를 바라고 있다.

위험을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동일기업의 각 거래거점 상호간에 행해지는 미러스왑에 관련된 지불은 독립기업간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

32)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용과생상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이 있기는 하나, 그 복잡성 등의 이유로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3) Comments received from Earnst & Young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배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소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구멍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거점간에 지불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사하고, 그것이 독립기업간 가격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손실배분(loss sharing)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동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5. 손실의 배분

이전가격세제가 불완전하나마 이익의 적절한 배분에 대하여 많은 지침을 주고 있으나, 막상 손실의 배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이익분할법이 사용될 경우 손실의 분할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손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 자국에게 불리하도록 손실을 자국에 위치한 지점이나 자회사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많은 나라들이 손실의 배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

이것은 파생상품의 사용이 빈번하여지면서 스플릿 헤지(split hedge), 순헤지(net hedge) 등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 헤징 전략에 의하여 한 곳에서의 이익이 다른 곳에서의 손실과 대칭되게 포지션을 잡는 것을 스플릿 헤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전가격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순헤지의 경우에도 집단적인 매칭을 통하여 헤지를 하기 때문에 특정 거래가 어떤 거래와 매치되는지를 일일이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손익의 귀속을 따지기 어렵게 된다.

내부 위험전가 거래와 관련하여 EU법에서는 지점과 현지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OECD 접근방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 자신과 본점간의 내부 보장거래에 대하여 손실을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자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EU법상으로는 위법이 되는데, OECD에서는 그렇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자회사가 흡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과 자회사간의 형평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이익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만일 손실배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익배분도 하지 말고, 수수료로써 끝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³⁴⁾.

6. 독립기업간 원칙의 적용과 단일기업과세제도

독립기업간 원칙은 그동안 국제조세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글로벌 트레이딩에 적용한다면 분리기업거래모델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전통적인 독립기업간 원칙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끌어낼 수 있다.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에 있어서는 중앙거래거점이 전체 거래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거래의 이익은 중앙거래거점에 귀속시키고, 다른 거래거점에는 그 서비스의 대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른 거래거점의 마케터들의 공헌이 크면, 서비스의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에 단순히 원가가산 방식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전체 이익에서의 배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거래모델에 있어서는 복수의 거래기능을 복수의 거래거점이 나누어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독립기업간 원칙에 의한 해결은 곤란하다. 해결을 위해서는 각 거래거점의 다른 기능 각각에 대하여 전통적

34) OECD, Comments received from Citigroup.

인 방법을 이용하여 각 거래거점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그와 같은 배분을 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각 기능의 상호협력이라는 면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통합거래 모델에 있어서는 각 기능이 밀접하게 상호 보완되어 있고, 그것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분할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상가격이란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독립기업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면이 많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독립기업원칙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 EU에서는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논의되었던 단일기업과세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OECD의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호하다. “... 따라서 단일기업과세제도(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에 근거한 어떠한 방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 (OECD 보고서 Part III, 문단 149).”

그러나 OECD가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중요소공식에 의한 이익분할법은 그 자체가 단일기업과세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익분할법(다중요소공식)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기능을 대표하는 요소를 선정하여, 각 요소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능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요소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OECD 보고서 Part III, 문단 159)”

물론 요소에 부과하는 가중치를 사안별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단일기업과세제도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독립기업원칙에 입각한 이전가격세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

안이라고 하겠다. “... 요소에 주어진 가중치는 이익분할법이 정상가격에 의한 이익분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이 이익분할법을 단일기업과세제도와 구분하는 차이점인 것이다. (OECD 보고서 Part III, 문단 168).”

한편 단일기업과세제도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는 지분비율이 매우 높은 특수관계기업간의 결손과 이익을 합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점에서 단일기업과세제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즉 법적으로는 다른 기업이더라도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 일체성을 가진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연결납세제도는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기업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며, 해외의 자회사나 현지법인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단일기업과세제도와 차이가 있다.

V. 이전가격세제의 전망

1. 독립기업 원칙의 의미

국제조세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온 미국에 의하여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되어온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고, OECD의 1979년 보고서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는 미국세법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국제적인 이전가격세제의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주도로 다른 나라들이 독립기업원칙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이에 이러한 원칙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과세당국간의 세수확보를 위한 전쟁으로까지 비취질 수 있는 동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이창희(2004)는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³⁵⁾.

다국적 기업이 초과이윤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비교가능 제3자가 가격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상가격이란 없고, 다만 정상가격의 범위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립기업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납세의무자를 담보로 관련국가들 사이에 세수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미국이 독립기업의 원칙을 흔들기 시작한 것은, 독립기업의 원칙이 낳는 정상가격대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미국의 자본이 해외에 공장을 두어 생산한 물건을 미국의 소비자에게 판다면, 공장소재지국은 미국내 판매활동에 대해서 정상이윤만을 남기

35) 이창희(2004), 『세법강의』, pp. 667~671을 참조하였다.

고 나머지 초과이윤 모두를 과세하면서 자기 입장을 독립기업의 원칙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면 되는 까닭이다. 다른 한편 미국기업이 미국 안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현지법인을 거쳐 파는 경우, 물건의 수입국은 미국내 제조활동에 정상이윤만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이윤을 모두 과세할 수 있다. 원가가산법을 적용하면 되는 까닭이다. 특히 1980년 무렵 이후로는 외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문제는 외국기업이 세금을 빼 먹는다는 감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이창희, p. 668).

그 결과 초과이윤에 대한 세수는 미국이 걷어야 한다는 주장하에 super royalty 조항으로 불리는 미국세법 제482조가 도입되었다. 그 내용은 “무형재산의 이전이나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이전이나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소득은 무형재산에 귀속될 소득과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초과이윤을 연구개발의 성과로 보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최적방법원칙(best method rule)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 곧 원가가산, 재판매가격 등 여러 방법이 모두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마다 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씩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과 다른 기업의 소득을 비교하여 미국정부가 정한다. 결국 미국의 세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게 마련이다”(이창희, p. 668).

이러한 최선의 방법의 하나로서 미국이 새롭게 도입한 것이 이익분할법이다. 이익분할법은 알다시피 특수관계자들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의 일부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삼는 것으로 단일기업과세 방식에 가깝다.

미국이 초과이윤을 차지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유럽의 국가들은 당연히 반발하였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1994년 개정 시행규칙을 통하여 제3자와의 소득비교를 우선 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종래의 전

통적인 방법 모두가 대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995년 OECD의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은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서 독립기업가격원칙을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계속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독립기업 가격 원칙의 뜻을 보다 넓게 풀이하여 이익분할법이나 거래순이익률 법 등 비전통적 방법들을 보충적으로 인정하였다. 물론 비전통적 방법에는 철저한 비교가능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국제적 규범으로서 자리잡은 독립기업 원칙은 이익기준법을 포함함으로써 그 의미가 상당히 확장되었다고 하겠다.

2.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역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간의 독립기업간 원칙을 둘러싼 대립관계에서 OECD는 이익기준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포함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이 독립기업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들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³⁶⁾. 따라서 OECD의 기본 입장과는 달리 경제적 통합도를 더해가는 유럽 연합(EU)에서는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이전가격세제의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하여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일기업과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되었는데, 여기서는 Picciotto(1995)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일기업과세제도

36) OECD의 이전가격지침 제8장 문단 8.3에 보면 이러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bearing in mind that transfer pricing is not an exact science.”). “정상가격원칙은 회계상 true and fair accounting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Competent Authorities 1986)

의 역사와 제도 자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³⁷⁾. 미국의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단일기업과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채택하게 될 경우 처하게 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가. 미국 州間의 단일과세제도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자신의 관할지역 안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최초의 형태는 미국 주정부들이 철도운송에 있어 철도세(railroad tax)를 부과하여 전체 철도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의 비율에 의해서 부속 건물, 철도, 철도 차량 및 다른 자산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1920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과세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Underwood Typewriter v. Chamberlain). 물론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다국적 영업을 하는 비미국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영국 맥주 회사가 영국에서 제조한 맥주를 뉴욕에서 판매함에 있어, 당시 미국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맥주의 제조 및 판매를 하나의 기업활동으로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뉴욕주가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과세는 합법적으로 여러 주에서 시행되었다(Bass, Ratcliffe & Gretton Ltd v. State Tax Commission, 1924). 1959년에 와서야 Northwestern Portland Cement 사건에서 미국 의회는 주정부가 해당 주에서 판매 영업만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제기된 2가지 문제는 첫째, 각 주들이 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이것을 법원에서 정

37) Picciotto(1995) 제9장 "The Worldwide Unitary Taxation Controversy"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할 문제인가 또는 의회에서 정할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³⁸⁾.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 주의 과세권을 조화시키려는 노력 진행되었다. 1957년 각 주의 과세당국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UDITPA(Uniform Division of Income for Tax Purposes Act)법이 입안되었다. 여기서 Multi-State Commission이 이러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동법에서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 직원 급여(payload), 판매액(sales)에 근거한 3요소 공식이 결정되었다. 1982년까지는 23개 이상의 주들이 UDITPA를 채택하고 Multi-State Tax Commission이 각 주들을 대표하여 해당 기업을 세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분야에서 주간에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첫째, 사용되는 공식에 있어 이를 세법에 명시하자는 주장과 일정 규정하에서 Commissioner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주장이 대립되었고 둘째, 해당기업이 단일기업(unitary)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들이 3요소 공식에 따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UDITPA에서도 납세자가 3요소 공식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고, 연방 대법원은 Moorman Manufacturing Co. vs Bair Case(1978)에서 일리노이 주(3요소 공식 채택주(UDITPA)) 사료회사가 아이오와에서 전체 판매량의 20%를 판매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에 있어 단일요소 공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이오 주와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무엇이 단일기업(unitary business)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UDITPA에서 3요소 공식은 오직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사업소득은 공식이 아니라 지리적

38)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세계적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처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치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계없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 귀속되고 특히, 판권으로부터의 수익은 그러한 권리가 사용된 곳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진다. R&D, 원료구입, 제조, 재무, 마케팅과 같이 여러 업무를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단일 생산물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주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나, 이러한 다른 업무를 서로 다른 주에 등록한 특수관계회사 간에 분담할 경우 복잡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을 세율이 낮은 주에 많이 배분하지 못하도록 자기 주에 등록한 회사에 대하여 관계회사와의 결합보고(combined report)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결합보고제도는 무엇이 단일기업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수밖에 없다.

연방대법원도 *Butler Brothers v. McColgan*(1942) 사건에서 3가지 일체성 시험을 제시하였는데, 소유(ownership), 운영(operation), 경영(management)의 일체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운영(operational)의 일체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를 중앙집중화하는 것도 운영의 일체성을 성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나. 국제적 단일기업과세제도

국제적인 단일세 과세제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에 많이 위치한 영화회사들이 분배사를 통하여 세율이 낮은 주로 소득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30년대부터 주정부는 종합 보고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일체성 시험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발하여 연방대법원이 승인한 것이다.

1960년대에는 오히려 기업들이 결합보고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캘리포니아 이외에서의 석유 채굴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다국

적 정유회사들이 그들의 미국 내에서의 정유사업을 하나로 보이줄 것을 요구하자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결합보고가 더욱 일 반화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결합보고를 준비하였는데, 이는 전체를 단일기업으로 보고 각 관계회사별 소득을 공식에 의하여 계산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 있어서도 결합보고가 채택되었는데, Exxon v. Wisconsin Dept. of Revenue(1980), Mobil Oil v. Vermont(1980) 사건에서도 정유회사들은 주정부의 주장대로 단일기업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단일기업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소득'일 경우에는 단일기업으로 보기 힘들고,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소액 지분참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Container Corporation(1983)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동종 업종일 경우에는 단일기업을 구성한다는 판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대형 정유회사들에 대한 단일기업과세가 강화되었다.

다. 단일기업과세를 둘러싼 움직임

미국내에서 198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국제적 단일과세제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외교 및 국제교역을 관장하는 연방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부의 과세권을 인정하였다. Japan Line v. County of LA(1979) 사건에서는 일본 화물회사의 Cargo Container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Container와 배는 모항에서만 과세한다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일 뿐이고, 위에서 언급한 Container Corporation 사건에서도 순법인소득에 대하여 국제단일기업

과세제도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Container Corporation 사건은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단일기업과세제도가 그 지역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상업 조약에 있어 '내국민 대우'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되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제단일기업과세제도를 위헌적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단일기업과세방식이 일관성 없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대외관계에 있어 그것이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상가격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주장되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Colgate-Palmolive v. Franchise Tax Board(1990) 사건과 Barclays Bank International v. Franchise Tax Board(1990) 사건에서 주의 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국제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기까지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노력도 지속되었다. 1974년 미-영 조세조약 개정시 영국은 OECD 모델조약의 정상가격원칙을 삽입(제9조 4항)하되, 연방정부만 아니라 그 이하의 지방정부에서도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인준과정에서 1978년 6월 제9조4항(Article 9(4))은 삭제된 채로 통과(1980년 3월)됨으로써 미-영간의 충돌을 야기하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국제단일기업과세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어 1984년 법인세를 부과하는 모든 45개주가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그 1/4 정도는 외국자회사도 결합보고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작은 연방정부를 지향하면서 많은 지출 프로그램을 주정부로 이양하였기 때문에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입원천으로서 국제단일기업과세가 중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과 영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한 레이건 행정부는 재무성 산하에 Task Force를 구성하여 1984년 8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원칙적으로 'water's edge' unitary

combination 방법을 도입하도록 제안하였는데, water's edge란 국제단일기업과세제도를 제한하지만, 만일 분리회계(separate accounting)가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IRS가 주정부에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영국은 1985년 Finance Act에서 영국의 자회사가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채택한 주에 있는 미국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환급을 철회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더욱 압력을 가하였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6년 9월 법인들에게 'water's edge option'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번 단일기업과세제도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한 기업들은 10년 동안 그 선택을 유지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회계공시를 해야 하며 특별 펀드에 기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다. 1988년 캘리포니아 주는 상기 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감축하는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전세계 경영에 대한 결함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요구하는 각국의 세법에 맞는 양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납세순응비용을 높인다. 또한 제출된 세무보고에 대하여 각국의 과세당국은 스스로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단일기업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납세순응비용뿐 아니라 조세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게 된다.

국가별 회계기준의 차이와 화폐단위 전환에 따른 과세베이스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중과세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달리 보면 화폐전환에 따른 차이는 분리회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설정을 위한 노력은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중이다³⁹⁾.

39) 유럽에서는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을 통일적으로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미국의 일반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과 세계 양대 회계원칙을 이루고 있다.

단일기업과세제도의 가능성 여부는 결국 경제적·정치적 통합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재 미국의 주들은 동 제도에 대하여 water's edge까지 물러나 있는 상태이다.

3. 대안으로서의 단일기업과세제도

OECD의 회원국이 대부분 유럽국가인 것을 생각하면 다소 역설적일 수 있으나, OECD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역내에서의 기업통합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단일과세베이스로 과세하는 것이 나올 것(consolidated accounts rather the combined report)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것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을 포함하는 OECD라는 국제적인 포럼과 EU 경제통합이라는 차원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2001년 European Commission 연구에 의하여 유럽 역내시장에서의 이진가격체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조화(harmonization)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지향하고 있다⁴⁰⁾. 처음에는 각국의 세율을 일정 한도 내에서 조절하고 궁극적으로 단일 법인세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 ① Home State Taxation (HST); 다국적기업이 모국의 조세제도에 의하여 세금계산. 상대국은 상호인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여 분배
- ② Common Consolidated Base Taxation (CCBT); 다국적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이 전체 EU에서 새롭게 채택된 운영세법(operational code)에 의하여 계산. 회원국들이 일종의 공통 규정에 대하여 동의. 이 경우에도 세율은 각 회원국에 의하여 결정
- ③ European Union Company Income Tax (EUCIT); 전 회원국에

40) Jacobs et al.(2004) 참조하였다.

적용될 새로운 법인세법(단일 세율 포함)의 제정을 필요로 함. 따라서 회원국들은 재정적인 독립성을 잃게 됨.

- ④ Single Compulsory Harmonized Tax Base (CHTB); 단일 세법이 각 회원국의 법인세법을 대신하고, 역내의 전체 기업에게 적용

단일기업과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단일기업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소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를 결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일기업과세에 대한 주된 반대논리는 국제적 정치적 프로세스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앙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연합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각국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통일이 필요하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늦어도 2005년까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IAS)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이 다른 지역보다 단일기업과세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세계적인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채택은 전세계적으로 투자의 중립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세수의 배분을 결정하는 요소의 확립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요소로 포함시키면 임금이 높은 선진국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대신 종업원 수를 요소로 포함시키면 보다 중립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icciotto(1992)는 일찍이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과세당국간의 협력을 통한 합의의 도출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 설정의 과정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VI. 우리나라의 현황과 제도 정비

지금까지 글로벌 트레이딩을 둘러싼 국제금융소득의 배분에 대한 OECD의 논의와 이전가격세제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동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세제 현황과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거래 관련 조항들이 여러 세법에 산재하여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전가격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글로벌 트레이딩의 이전가격세제 및 기타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실정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해당 국제거래는 모두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글로벌 트레이딩의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선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트레이딩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국내외 금융거래와 관련된 현행 규정들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⁴¹⁾.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도 정비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41)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설명은 김영근(2003), 이용섭(2001) 및 국세청 자료들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제도

가. 이전가격제도의 의의

이전가격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VI-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체제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1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내지 제2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7조
 - 국세청 고시 제2003-5호
-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국외특수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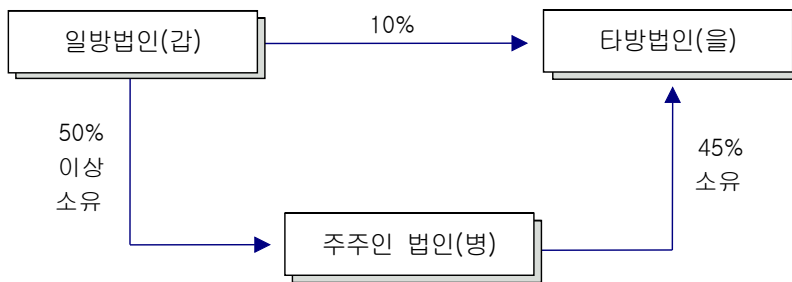
이전가격세제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 1)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 2)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3)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4)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간의 관계가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5)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 6)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한편, 주식소유비율의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 1)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
-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그림 V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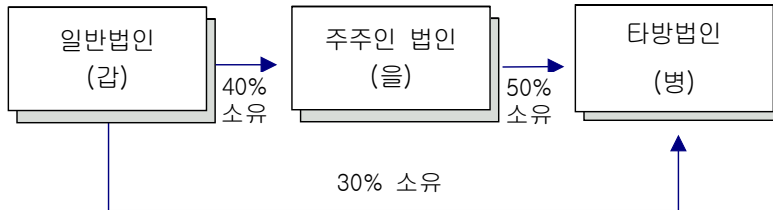
[그림 VI-0] 주식소유비율의 계산 ①



- 직접 소유비율 : 10%
- 간접 소유비율 : 45%
-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10%+45%=55%

- ② 일반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그림 VI-2] 참조)

[그림 VI-2] 주식소유비율의 계산 ②



- 직접 소유비율 : 30%
- 간접 소유비율 : 20%(=40%×50%)
-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30%+20%=50%

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이라 한다.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는 전통적인

거래기준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이 있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Berry Ratio법 등이 있다. 국조법에서는 전통적인 거래기준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최적방법규칙(best method rule)을 적용하고 있다. 각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거래 기준법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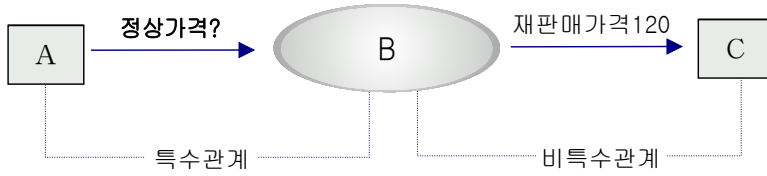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독립된 자간의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나) 재판매가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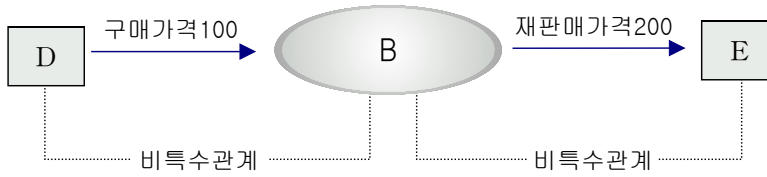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림 VI-3] 재판매가격법

◆ 특수관계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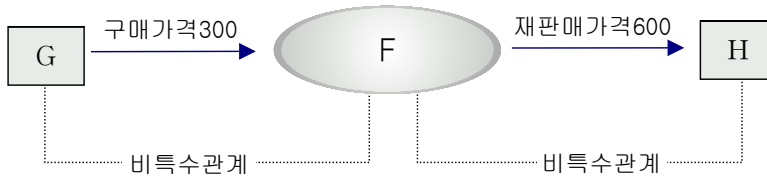


◆ 비교대상거래 1



- B의 매출총이익률 : $(200-100)/200=0.5$
- 정상가격 : $120(\text{재판매가격})-120 \times 0.5=60$

◆ 비교대상거래 2



- F의 매출총이익률 : $(600-300)/600=0.5$
- 정상가격 : $120(\text{재판매가격})-120 \times 0.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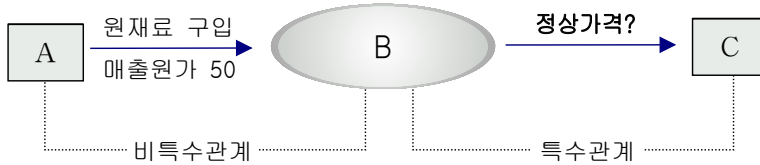
다) 원가가산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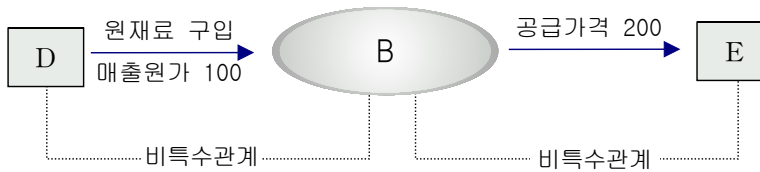
을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이라 한다.

[그림 VI-4] 원가가산법

◆ 특수관계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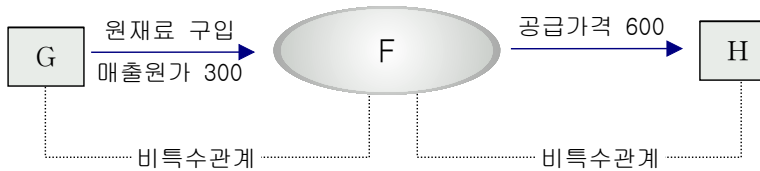


◆ 비교대상거래 1



- B의 원가가산율 : $(200-100)/100=1$
- 정상가격 : $50(\text{매출원가}) + 50 \times 1 = 100$

◆ 비교대상거래 2



- F의 원가가산율 : $(600-300)/300=1$
- 정상가격 : $50(\text{매출원가}) + 50 \times 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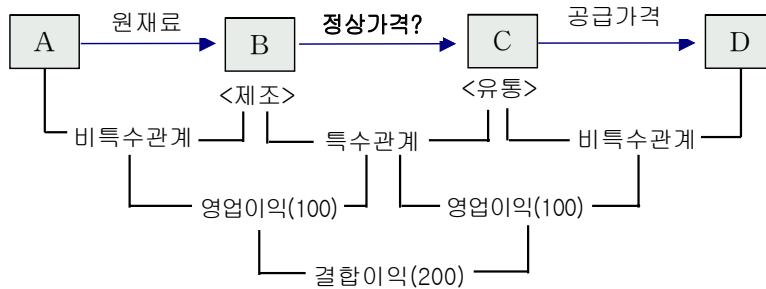
2) 기타 합리적인 방법

가)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은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을 토대로 측정한다.

[그림 VI-5] 이익분할법

◆ 특수관계거래



◆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이익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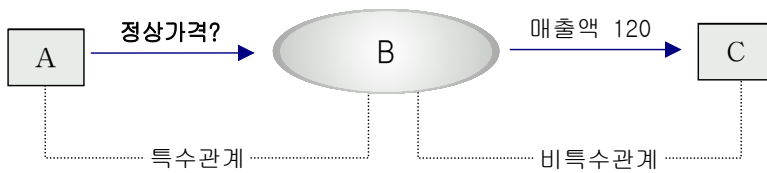
- 비용비율 ⇒ B : C=50 : 10=10 : 2
- 자산비율 ⇒ B : C=200 : 100=10 : 5
- 결합비율 ⇒ B : C=(10+10) : (2+5)=20 : 7
- B의 영업이익 ⇒ $200 \times \frac{20}{27}$
- C의 영업이익 ⇒ $200 \times \frac{7}{27}$

나) 거래순이익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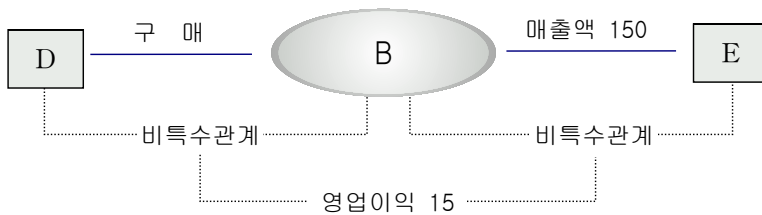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라 한다.

[그림 VI-6] 거래순이익률법

◆ 특수관계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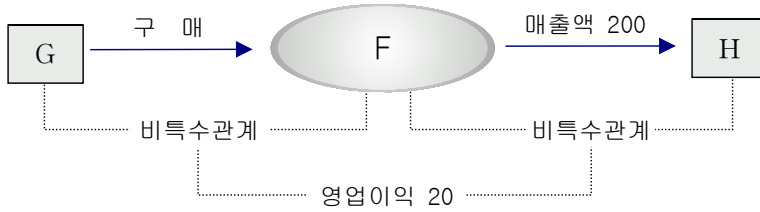


◆ 비교대상거래 1



- B의 영업이익률 : $15/150=0.1$
- 정상 영업이익 : $120(\text{매출액}) \times 0.1 = 12$

◆ 비교대상거래 2



- F의 영업이익률 : $20/200=0.1$
- 정상 영업이익 : $120(\text{매출액}) \times 0.1 = 12$

다) Berry ratio법

Berry ratio법은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Berry ratio)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그 적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경제적 위험을 고려해 볼 때 자회사가 적절한 이익을 벌어들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매출총이익/영업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바탕하에 Charles Berry 교수가 제안한 방법이다.

이러한 Berry ratio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은 기업이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수행된 용역의 정도는 영업비용 수준에 의해 측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Berry ratio는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대상기업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유통업에 적용하기 적절한 방법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의 자동화 정도나 대량생산 여부 등에 따라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영업비용이 수행된 용역의 정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대상기업의 영업비용 구성이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 구성과 유사할 경우 비교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 ④ Berry ratio는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기업 또는 비교대상 기업이 비능률적으로 영업비용을 사용함으로써 타기업에 비해 영업비용의 사용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
- ⑤ 기업체의 자본필요량(자산)이 영업비용에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하며 비교대상 기업의 매출 혹은 영업비용 대비 영업자산의 비율이 대상기업의 것과 비슷하여야 한다.

【적용 사례⁴²⁾】

예를 들어, 조사대상 업체 A는 유통(무역업)업체로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반도체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조립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A업체 수입판매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A와 유사한 반도체 수입업체 B, C, D의 수입가격 및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비용 등을 살펴본 결과 <표 VI-2>와 같다고 하자.

<표 VI-2> 비교 대상업체의 영업 현황

구 분	비교대상 B	비교대상 C	비교대상 D	조사업체 A
순매출	100,000	120,000	1,200,000	110,000
매출원가	70,000	96,000	960,000	(100,000)
매출총이익	30,000	24,000	240,000	(10,000)
영업비용	25,000	18,000	180,000	22,000
영업이익	5,000	6,000	60,000	(-12,000)

42) 김영근(2003), p. 499의 예를 인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rry ratio는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영업비용)로 B, C, D기업의 Berry ratio는 각각 1.20, 1.33, 1.33이다. 이 비율을 조사대상 기업 A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들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B, C, D업체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D의 경우 A, B, C에 비교하여 매출액 규모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B, C, D의 단순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표 VI-3> Berry ratio 분석

구 분	비교대상 B	비교대상 C	비교대상 D	평 균
단순평균 Berry ratio	1.20	1.33	1.33	1.28
가중평균 Berry ratio	1.20	1.33	1.33	1.32

단순평균: $(1.20 + 1.33 + 1.33) / 3 = 1.28$

가중평균: $\frac{(1.20 \times 100,000 + 1.33 \times 120,000 + 1.33 \times 1,200,000)}{100,000 + 120,000 + 1,200,000} = 1.32$

따라서 D를 제외하거나, 관련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D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B, C, D의 단순 평균치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B, C, D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가중평균치 계산은 각 비교대상 업체의 Berry ratio에 매출액을 곱하여 합산한 다음 각 업체의 매출액을 합산한 수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위 조사대상 업체 A의 정상적인 매출총이익은 단순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28,160 (= 영업비용(22,000) × 단순평균치(1.28))이고, 가중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29,040 (= 영업비용(22,000) × 가중평균치(1.32))이 된다. 따라서 가중평균에 의하여 이전가격을 과

세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은 7,040(29,040 - 22,000)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하여 보면 <표 VI-4>와 같다. 전통적인 거래 접근법들은 주로 제조·유통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4> 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비교

방 법	비교가능 기준	대 표 적 적용대상	비교가능 지표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 예시	
전통적 거래 접근법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 (CUP)	매우 높음	제조, 용역 제공	거래가격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시장수준(도매, 소매 등), 판매지역, 거래일시, 상표, 특허, 계약 및 지불조건, 운송·보험료 포함 여부, 수량 할인 (volume discount) 여부, 시장전략
	재판매 가격법 (RP)	높음	유통, 단순 가공	매출총이익/매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독점판매권 혹은 무형자산(예: 마케팅 무형자산) 유무, 시장전략, 판매지역
	원가 가산법 (CP)	높음	제조, 용역 제공	매출총이익/매출원가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제조효율, 무형자산유무, 시장전략, 판매지역
기타 합리적인 방법	이익 분할법 (PSM)	보통 혹은 낮음	모든 업종	이익분할비율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부담비용 및 자본투자, 무형자산소유 여부
	거래순 이익률법 (TNMM)	보통 혹은 낮음	모든 업종	영업이익/매출영업이익/영업자산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기업의 경쟁력 상태, 경영능률, 사업단계(창업단계, 성숙단계 등)
	Berry ratio	보통 혹은 낮음	용역 제공 (유통, 중계 등)	매출총이익/영업비용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영업비용의 구성, 경영능률

자료: 김영근(2003).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 동안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 승인 절차

가)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 ① 대상 특수관계거래, 적용기간(통상 3년 내지 5년), 정상가격산출 방법의 명칭을 기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적용기간 중 최초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표 VI-5>에 나와 있는 각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승인신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말한다.

<표 VI-5>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

-
1.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채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7.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

나)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① 국세청은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다.
-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은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있

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⁴³⁾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분담할 수 있다.

다)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 ① 국세청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의 요구를 납세의무자가 수용하여 일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이 일응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② 그러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바로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반환하게 된다.

라) 사전승인

- ① 국세청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상호합의 절차에서 합의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당초 신청된 또는 국세청의 심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수용하여 변경된 방법과 다른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동 방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양 과세당국이 이미 합의하였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조세목적상으로는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 ②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된 경우는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43) 중립적 전문가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 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를 말한다.

- ③ 상호합의 절차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가거나, 납세의무자의 사전승인 신청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으로부터만 사전승인을 얻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마) 연례보고서의 제출

- 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i)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 ii)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 iii)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iv)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②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적용대상 사업연도 중 일부의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으로 국세청의 최종적인 사전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기 직전단계까지의 국세청 심사결과 정해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토대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후에 상호합의 절차에서 합의되어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종전의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승인후 최초로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경과한 사업연도의 연례보고서 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전승인의 취소 등

- 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3조).
 - i)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ii)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 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iii)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iv)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 ②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당초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의 권리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준수사항이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하겠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둘째, 사전승인신청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사용되는 비교대상거래 또는 기업의 구

체적 가격 또는 영업성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대상의 명칭이나 요건만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국세청의 사전승인 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넷째, 사전승인신청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내용에 포함되거나 국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진술한 비사실적 사항에 대한 의견만을 근거로 추후 이전가격조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게 된다.

2. 기타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현황

본절에서는 이전가격세제를 포함하여 국내외 금융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원천지국의 세법이 적용될 것이고, 지점의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되므로 원천지국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유입투자(inbound investment)와 해외유출투자(outbound investment)는 대칭적인 관계가 있으며, 여기서는 우리 제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국내유입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전세계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수행할 때 관련이 되는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는 우선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이 적용될 것이다. 외국의 모회사가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규정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또 외국모회사와 국내 현지법인의 과세소득의 이전이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제도 규정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외국모회사가 국내와 국외를 걸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내·외에 걸쳐 원천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를 구분하

는 것이 어렵다. 이때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법인세법 제2장)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법인세법 제4장)
- 해당국과의 조세조약
- 이전가격과세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법인세법 제93조 및 동 시행령 제132조)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금융거래 활동을 수행한다면 기본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것이므로 이때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이 적용될 것이다. 국내지점의 이익이 외국본점으로 송금될 때에는 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지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당에 대한 과세와 세 부담이 비슷한 지점세가 적용된다. 외국 의 본점이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규정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또 외국 본점과 국내 지점의 과세소득의 이전이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제도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는 기준도 현지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에 대하여 다른 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찾을 수 있다.

-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법인세법 제2장)
-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법인세법 제4장)
- 해당국과의 조세조약

- 이전가격과세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법인세법 제93조 및 동 시행령 제132조)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가. 국내/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

국제거래가 빈번하여짐에 따라 국내·외에 걸쳐서 영위되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1988년 말 세법 개정에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였다.

1) 재고자산의 판매

가) 재고자산의 국내원천소득

재고자산의 소득원천지는 재고자산의 판매지 및 제조지이다. 이러한 재고자산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양도되었을 경우 당해 재고자산의 판매지 및 제조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하였고,

제2호에서는 외국법인이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하고 그 제조활동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호와 제3호에서는 또 가격결정기준은 제3자가 그 외국법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고자산을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 그 국내업무로부터 발생해야 할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의 재고자산의 양도’라는 개념과 ‘통상의 거래조건’이다.

나) 국내에서의 재고자산의 양도

양도의 개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 i)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 ii)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 iii)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다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고자산은 국내에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즉 국내사업장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계약이 체결되거나, 중요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 통상의 거래조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말하는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한 거래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독립기업간원칙을 의미한다. 독립기업간원칙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가격인 독립기업가격(*arm's length price*) 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자의적인 조

작에 의하여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독립기업가격은 특수관계 자끼리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 i)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고자산으로 독립된 사업 자간에 형성된 가격(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ii) 당해 재고자산의 국외에 있어서의 제조 등의 원가에 그 제조 등에 따른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원가가산법)
- iii) 당해 재고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를 위하여 통상 요하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비용과 그 양도에 따른 통상 이윤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전통적인 독립기업가격으로 본다(재판매가격법).

2) 건설업(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제2항 4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3) 보험업(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제2항 5호)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⁴⁴⁾.

44) 따라서 보험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 있는 영업소 또는 계약체결권을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운영되는 사업소득의 국내 과세소득은 국내에서 존재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수입되는 총수입금액에 적정한 요율을 계산한 금액에 국내의 사업장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차감하여 발생한 부분을 과세소득으로 한다(김영근, 2003, p. 277).

4) 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제2항 6호)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5) 기타소득(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제2항 9호)

외국법인이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이들 국내·외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에서 보험사업의 면허를 받아 국내에서 직원을 두고 보험의 모집·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김영근, 2003).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규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에 대하여 다른 법인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일반외국법인 국내지점과는 달리 독특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

가)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타인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자기자금의 경우에는 특별히 감면혜택이 없다. 즉 자기자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타인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제상의 우대를 받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금이 타인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이자는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의 1).

나) 자기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일반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자기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금이 자기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기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의 1).

다) 본·지점간의 내부대체거래이자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내부대체거래 및 자금결제를 위한 차대월발생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입이자(본·지점 차 이자)는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의 6).

<예> 본점에 있는 서울지점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면 당좌대월이 발생하여 본점은 지점에 대하여 이자(본·지점 차 이자)를 징수하고, 반대로 그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서울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이자(본·지점 대 이자)를 징수하고 있으나, 본·지점 차대월이자(본·지점 대 이자)는 대외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본·지점간의 내부대체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점의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무상 당좌차대월이자(본·지점 대 이자)는 결산서상에 손금 및 익금으로 반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조정하고 있다.

라)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의 구분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이자 중에 타인자금을 해당되는 지급이자(본·지점 차 이자)는 손금에 해당되지만, 자기자금을 해당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점이나 해외의 지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이 자기자금을 해당되는지 혹은 타인자금을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외조달자금을 대하여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을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국세청고시 제99-29호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동 국내지점의 자본금추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금의 총액을 타인자금으로 본다.

- ② 국내지점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동 국내지점의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총자본금 중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금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타인자금으로 본다.
- ③ 자본금추산액 계산에 있어서 '국내지점 및 산하 각 지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금액'에는 납입자본금·영업기금·잉여금을 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은 당해 영업기간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과의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기순이익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한다.
- ④ 자본금추산액 계산에 있어서 '본점 및 산하 각 지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계정에 계상된 지급승낙대출 등의 대조계정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은 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 중에서 본·지점 평잔액에서 공급받은 자기자금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마)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는 국내지점이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 또는 SIBO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국내지점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실세이자율을 적용한 지급이자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또한 실세이자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이 공급받은 타인자금의 거래 중 각 자금의 거래별로 볼 때 실제 지급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을 초과하거

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경우의 초과 지급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미달한 경우의 미달이자 상당액 총액을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의 3). 위의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은 로이터 통신사가 공표하는 마감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의 4).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

가) 대손충당금이 공통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원화대부 등의 과세사업과 외화대부 등의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동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즉 업종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세사업채권과 면세사업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3의 1).

나) 대손충당금을 개별손금으로 신고한 경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대손충당금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은 개별손금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세사업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

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3의 2).

다) 개별손금·공통손금 선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의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국내지점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은 동일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3의 3).

3) 본점경비 배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지점의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배분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1999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외국기업과 외국은행 본점경비 배분방법을 국세청에서 통일하여 고시한다.

가) 배분대상 경비(국세청고시 제99-28호)

-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 경비로 하며,
-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 경비에 포함한다⁴⁵⁾.

45)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나) 배분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배분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로서 다음과 같다.

-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다) 본점경비 배분계산방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 계산방법은 항목별 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비배분을 당해 경비 발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거나 모든 경비를 관련 항목으로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리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계산하기 간편한 일괄배분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배분방법과 배분기준은 그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 경비에서 제외한다(김영근 2003).

(1) 항목별 배분방법

- ① 항목별 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항목별 경비 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 ③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 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합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일괄배분방법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 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점 등의 경비배분액 =	+	통합점의 배분대상 경비	×	$\frac{\text{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 산하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text{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국내지점 합계액}}$ $\times \frac{\text{통합점의 수입금액과 통합점 산하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text{통합점의 수입금액}}$	×	$\frac{\text{국내지점의 수입금액}}{\text{국내지점의 수입금액과 본점 산하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	--------------------	---	---	---	---

4) 차관이자소득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 기본통칙 93-0-1)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과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공여하는 차관과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하여 공여하는 자금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동 차관 등을 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지점이 동 차관 공여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

가) 국내지점이 차관 공여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차관 등의 계약상 직접 대주로 참여하고 당해 국내지점의 책임과 위험 부담으로 차관 등의 자금을 조달·공여함으로써 동 국내지점이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한 경우에는 동 차관 등의 이자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손비는 당해 국내지점의 손익에 귀속되며 이 경우 당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차관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국내지점이 보조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이 제공한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됨이 없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위하여 그 차관 등과 관련한 보조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연락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관 등의 이자소득이 그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차관 등과 관련한 연락업무에 소요된 비용은 그 국내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그 국내지점의 당해

차관 등의 계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관 등과 관련한 연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의 계산은 실제 발생비용으로 하며 개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계속적으로 적용한 방법으로서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이 공여한 차관 등의 건수, 그 연락업무를 수행한 시간·인원수·인건비 기타 필요한 객관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외화의 원화 환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64조 3항)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비배분액 계산에 외화의 원화 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⁴⁶⁾.

6) 본점 경비배분액의 신고 및 입증

가) 신고 및 제출서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배분액을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 신고서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46) ① 외국은행이 지정통화로 거래하거나 기장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의 연평균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② 외국은행이 지정통화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거나 기장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재정환율의 연평균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김영근, 2003).

-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자료제출의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 등의 경비배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국내지점에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본점 등의 경비배분기준이 합리적이며, 동 경비 배분액이 합당한 것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점은 이를 제출하거나 입증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우리나라의 관련 과세규정에 대한 평가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정상가격 결정의 방식으로 거래기준법을 이익기준법보다 우선하는 순서를 두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외의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해외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할 때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접근하는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따

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의 해당규정을 두는 것은 납세의무자들에게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납세순응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는 납세의무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증빙자료를 요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하며 이들 증빙자료에는 해당되는 정상가격 결정방식을 채택한 사유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자료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런 점에서 정상가격 결정에 대한 일차적인 소명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겠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입증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동 제도가 본래 의도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물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별 거래가 각기 독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적인 논의의 진행에 따라 향후 정상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산업별 특성이나 거래의 성격(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무형재화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각각 다르게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되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이광영(2004)은 이전가격세제에 있어서 내국법인과 그 국외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대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는다. 따라

서 내국법인의 전세계 소득이 일정할 때, 국외원천소득부분이 커지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세수가 줄어든다.

이 경우 내국법인과 그 국외사업장간의 거래에 있어 이전가격조작에 의한 국내조세회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국법인과 그 국외사업장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거래⁴⁷⁾에도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과 그 국외사업장을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국제거래의 정의도 우리 나라의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거래로 개정함으로써 내국법인과 그 국외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도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득은 대부분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한다.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법인세법 제94조), 귀속되는 소득의 성격(법인세법 제93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결정 등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국제적인 협약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OECD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인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의적인 행정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가 기준이 된다. 동 조항은 국제거래를 재고자산의 판매, 건설업, 보험업, 출판/방송사업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보험을 제외하고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서 보아야 할 것이다.

47)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 규정되어 있다.

기타소득 관련 규정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이들 국내외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게 독립기업간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기타소득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독립기업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규정인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도 독립기업간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요소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자기자금을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금이 자기자금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기자금을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법인세법 기본통칙(92-129-2의 1)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내외의 본지점 관계를 독립기업으로 보고 본지점간의 거래도 그 대가나 조건이 독립기업들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조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충돌한다.

4. 시사점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국제금융거래의 특성에 맞는 독립기업간 원칙 실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기업간 원칙이 전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업계에서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상가격원칙의 실현을 위한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기가 힘들고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아도 정상가격이라는 것은 특정한 가격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정한 범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정상가격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일종의 협상과정을 거쳐서 한 특정한 정상가격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까지 OECD에서 애써 무시하여 오던 이익분할법 같은 방법에 비하여 적용이 훨씬 복잡하고 징수 및 납세비용이 높은 것에 비하여 개별거래에 적합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금융거래는 다국적금융그룹이 전세계에 포진하는 거점간의 운영(operation)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별적인 운영이 전체 거래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부담하는 위험의 공헌도를 모두 분석하여 전통적인 독립기업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기존의 사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금융거래 분야에 대한 단일기업과세제도(formulary apportionment)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업분야에서 국내 과세소득은 국내에서 존재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수입되는 총수입금액에 적정한 요율을 계산한 금액에 국내의 사업장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차감하여 발생된 부분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방식의 논리적 연장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미국, 캐나다, 독일⁴⁸⁾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48) 독일에서는 기업이 몇 개의 사업장을 여러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거나 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세계산금액은 관련되는 자치단체에 분할되어야 한다(영업세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185조 이하). 영업세법 제29조에서는 이 분할기준으로 지불입금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지불입금이 동 회사의 전체 지불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영업세 계산금액이 동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용되며 독립가격원칙처럼 현재 국가들 사이에서 과세표준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OECD가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하여 임의적이고 시장상황을 무시하며, 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해 왔던 탓에 기인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단일기업과세제도가 기업을 위하여 순응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혁이라고 보여지나 이것이 세계경쟁을 야기하고 과세표준을 조작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단일기업과세제도하에서 이전가격문제가 사라진다고 보아서도 곤란하다⁴⁹⁾.

독립가격원칙하에서 개별 국가들은 한계투자(marginal investment)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게 되며 그 투자로부터의 한계수익(marginal return)은 해당국가의 과세표준을 넓혀준다. 그에 비하여 단일기업과세제도하에서는 한계투자의 유치로 인한 혜택은 통합된 소득을 나누기로 한 기준(예를 들어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라 나누어진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라 나눈다고 하면 개별국가들은 수익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활동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것이므로 이를 유치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또한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분할요소에 부가가치나 판매액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전가격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 법인세 징수행정이 기업의 본부가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는 세수 극대화를 위하여 자국 내에서 가치창출이나 판매액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는 관계기업으로부터 원자재나 기타 구매에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관계기업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단일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가?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

49) Sunley(2002)를 참조하였다.

서 고려할 분할요소(apportionment factors)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 분할요소로 제시되는 기준은 자산규모, 부가가치 창출, 판매액 및 지불임금 등이 있다. 자산규모(특히 무형재화 등)의 경우 기업활동에서의 기여도와 중요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적절한 평가(valuation)의 문제가 존재한다.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EU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절하게 보는 시각이 드물다고 하겠다. 한편 판매액에 대해서는 평가(evaluation)가 상반되며 그에 비하여 지불임금액은 상대적으로 좋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⁵⁰⁾.

최종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한 고려 요소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는 트레이딩, 위험관리, 판매, 마케팅, 관리, 연구개발(R&D)등의 행위가 있다. 이 가운데서 트레이딩과 위험관리 기능이 국제적으로 다른 기능보다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나 국제금융 거래에 있어서의 노하우에서 앞서 나가지 않는 한, 남들보다 많은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 가능한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우선 유입투자(inbound investment)의 경우,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상장된 우리나라의 증권에 투자하는 예를 볼 때 트레이딩 행위는 이루어지나 그 외의 대부분의 행위는 외국투자자가 거래하는 국제금융회사의 소재지인 외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유출투자(outbound investment)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를 국제금융회사가 모집하여 외국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마케팅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행위는 국제금융회사의 소재지인 외국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관련하여 단일기업과세의 분할요소 중 매출액 및 지불임금과 관련된 부분만이 그나마 국제금융거래와 관

50) 보다 자세한 것은 Jacobs et al(2004), Weiner(2002), Raedler(200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련한 세원의 국제적 배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금융의 하부구조가 정비되어 국제 금융회사의 본사나 지역본부가 우리나라에 소재지를 두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금융거래의 세원배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로서는 단일기업과세의 분할요소를 정할 때 국내 세법에서 그리고 향후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서 매출액과 지불임금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I. 결 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소 앞서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첫째는 OECD에서의 논의 완료시점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OECD에서의 논의는 2005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논의의 진전 상황을 검토한 결과 2005년 1월의 CFA 회의에서 향후 일정을 조절하여 2007년 1월 이전에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수정되었다. 따라서 OECD에서의 논의가 결론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즉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현재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둘째는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트레이딩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영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이나 인력의 노하우 측면에서 세계적인 자본의 powerhouse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기간의 연장은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지금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인 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자본(capital)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모든 잔여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로서의 자본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은, 메릴린치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투자은행가(investment banker) 특히 트레이더들에 대한 보수도 자본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보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데에서도 읽을 수 있다⁵¹⁾. 둘

51) 메릴린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트레이더들이 수익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은행으로부터 독립

제,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에 대한 귀속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기능 분석을 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마케팅 기능보다는 트레이딩과 위험관리 기능이다. 이러한 관점은 역시 자본을 중시하는 첫 번째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 기능은 본부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서 행하는 마케팅 기능에는 많은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으며, 통합 거래모델에서는 금융허브에서 이러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의 본부를 설정할 입지가 되지 못하며, 통합거래모델에서도 24시간 거래의 거점으로서 뉴욕, 런던, 홍콩, 동경 등의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러한 글로벌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금융기관이 글로벌 거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을 두더라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할 소득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트레이딩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 문제가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는 확실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OECD에서 어떠한 이슈에 대하여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논의 결과가 지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귀결은 당연히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전가격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는 정상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하여 헤지펀드를 설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이 보다 정교하지 못함에서 오는 적용의 유연성은 과세당국의 몫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확대되어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조세 관련 법령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정비해 나갈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되, 현재 제기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와 같은 것은 국제적 대형 투자은행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현재의 OECD 제안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방향이 유지되도록 힘을 필요가 있다. 소득 귀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새로운 모델들, 내부 위험전가 거래의 처리 방안, 손실의 배분 메커니즘 등의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국제적인 세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하겠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가격원칙을 이용한 이전가격세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안별로 해결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기업과세제도도 이미 OECD에서 인정한 이익분할법과 유사한 제도이며,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연방국가 형태의 나라에서 국내적으로 사용 경험이 있는 제도이다. 다만 단일기업으로의 판정, 결정 요소의 선택, 가중치의 결정 등 실무적인 문제부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의 포기라는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어 단기간 안에 국제적으로 적용될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전세계에 걸쳐 수십개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금융그룹이 자본의 배분을 위하여 적어도 2~3개의 배분 시스템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나라마다 그 나라의 세법에 맞춰 조금씩 달리 변형하여 적용해야 한다면 납세순응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다국적 금융그룹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러한 방법이 일관성 있게 사용된다면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길 바라고 있다. 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유럽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를 위하여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그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립가격원칙과 단일기업과세제도의 갈등 속에 Tanzi(1995)는 국제적인 조세조화를 통한 과세를 위하여 국제무역에서의 WTO와 같은 세계조세기구(World Tax Organization)의 창설을 주장한 바 있다. 세계조세기구는 국제적인 과세의 규범을 정하고 각국이 이러한 규범에 따르도록 하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각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권으로 간주되는 과세권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WTO의 창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EC에서 제시한 점진적인 방안을 따른다면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이 적어도 유럽에서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국제조세는 ‘협상’이니만큼 협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금융 역량의 내실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세계의 공통적인 전형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근, 『국제거래조세』, 세경사, 2003.
- 박현수·전효찬,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7. 27.
- 옥무석, 「이전가격세제의 최근 동향: 금융업 및 국제투자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004.
- 이광영,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선방안」, 『국세월보』, 2004. 8.
-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1.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4.
- 홍범교,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홍범교·안종석,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12.
- 宮武敏夫, “金融商品のグローバル・トレーディングに対する課税—OECD 報告書について,” *International Taxation* Vol. 17, No. 5, 1998, pp. 13~21.
- BIS, *Quarterly Review*, September 2004.
- Competent Authorities, “International Taxation: Competent Authorities Share Their Concerns,” *Tax Notes*, August, 11, 1986, pp. 573~605.
- Jacobs, Otto et al. “ICT and Profit Allocation within Multinational Groups,” *Intertax*, Vol. 32 No. 6/7, pp. 268~283.
- Neighbour, John, “The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 Instruments," *Tax Notes International*, April 20, 1998, pp. 1269~1273.
- _____, "Transfer Pricing: Keeping It at Arm's Length," *OECD Observer*, April 2002.
- OECD, *The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1998.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BIAC,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British Bankers Association/London Investment Banking Association/Association of Foreign Banks,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Citigroup,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Deloitte & Touche,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Earnst & Young,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KPMG Worldwide Banking Tax Practice,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London Tax Department,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Merrill Lynch,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Merrill Lynch on the Analysis of Hedge Funds, OECD website.
- _____, Comments Received from Pricewaterhouse Coopers, OECD website.
- _____, Discussion Draf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art I (General Considerations), CTPA/CFA(2004)74/ CONF, 09-Jul-2004.
- _____, Discussion Draf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art II (Banks), CTPA/CFA/WP6/TP(2004)9/CONF, 16-Aug-2004.

- _____, Part III: Special Considerations for Applying the Working Hypothesi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Enterprises Carrying on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DAFFE/CFA/WP6(2003)2/CONF, 05-Feb-2003.
- _____, Part IV: Revised Note on Special Considerations for Applying the Working Hypothesi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Insurance Companies, DAFFE/CFA/WP6(2001)16/CONF, 12-Dec-2001.
- _____, Economic Analysis of the Split of Profits between Hedge Fund Investors and Hedge Fund Management by Merrill Lynch & Co. Inc.
- Picciotto, Sol, *International Business Taxation*, Quorum Books: New York, 1992.
- Raedler, Albert, "Recent Trends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Taxation," *Intertax*, Vol. 32, No. 8/9, pp. 365~376.
- Rosenbloom, H. David, "Trends in International Taxation," presented at the seminar of International Tax Law for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organized by IFA/Korea, Oct. 15, 2004
- Sunley, Emil, "The Pros and Cons of Formulary Apportionment," *CESifo Forum*, Jan. 2002, pp. 36~37.
- Tanzi, Vito, *Taxation in an Integrating World*, The B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5.
- Weiner, Joann, "Formulary Apportionment and the Future of Company Taxation in the European Union," *CESifo Forum*, Jan. 2002, pp. 10~20.

<부록> 이전가격관련 OECD 모델 조약 규정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 a) a place of management;
 - b) a branch;
 - c) an office
 - d) a factory
 - e) a workshop, and
 -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조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관리장소
 - (b) 지점
 - (c) 사무소
 - (d) 공장
 - (e) 작업장
 - (f)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b)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c)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d)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 (e) 그 기업을 위한 여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 (f) 이들 활동이 복합된 결과로 나타난 그 일정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세항 a)~e)에서 언급된 활동만의 집합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어떤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의 조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인의 활동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그 일정한 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전기 제4항의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한 경우에 한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어떤 기업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어느 기업이 타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d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 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

법은 그 결과가 본조에 포함된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조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항의 다른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이든, 양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국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국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된 타방채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그 산입된 이윤이 쌍방의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타방채약국의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동 타방채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 적당한 조정을 한다. 이 조정에는 본 조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하다면 상호협의를 한다.

<국문요약>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홍 범 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를 커버하는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다국적 금융회사의 존재를 세계각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각 거래거점별로 어떻게 이를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파생상품 및 유가증권의 24시간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4시간 글로벌 트레이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분리기업모델이나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에서는 소득의 귀속에 있어 이전 가격세제의 전통적인 가격기준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통합거래모델에서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분할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거래의 고정사업장 개념과 관련하여 기능분석 및 실무분석을 통하여 자본과 인적기능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이에 따라 각 거래거점에 소득을 분할 귀속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국제금융거래 소득과세의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다. 첫째,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둘째,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소득 귀속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셋째,

소득 귀속을 위한 요소들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국제금융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금융그룹 내부의 위험전가거래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이익분할법이 사용될 경우, 손실의 분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섯째, 독립기업원칙의 대안으로서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이다.

OECD 회원국이 대부분 유럽국가인 것을 고려한다면 다소 역설적일 수 있으나, OECD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역내에서의 경제통합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얻어가고 있다. 물론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실시에도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유럽에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가시적인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OECD의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24시간 거래에서 얻는 국제금융소득의 배분에 있어 자본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 귀속을 위한 기능분석을 행함에 있어 판매나 마케팅 기능보다는 트레이딩과 위험관리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과세할 소득이 별로 생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의 논의가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논의 결과가 향후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방향의 귀결은 우리와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전가격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의 관련 법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법이 보다 정교하지 못함에서 오는 적용의 유연성은 과세당국의 몫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확대되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제조세관련 법령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정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련 정책 과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그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제 금융거래 유형을 고려하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일 기업과세제도에서 채택될 요소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미리 연구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 국제조세는 ‘협상’ 이니만큼 협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금융 역량의 내실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세제의 공통적인 전형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Essay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from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Beom-Gyo Ho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24 hour-based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began to flourish over the world. Today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presence of those multinational financial enterprises operating in various places of the world. These multinational financial enterprises like investment banks are making a huge sum of financial profits from the global trading of financial derivative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Hence the attribution of these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be addr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axation.

OECD is currently taking on this issue with taxing authorities of its memb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powerhouses. Basically functional analysis and factual analysis will be the criteria for the attributions. The role of capital/risk assumption and the function of risk management are emphasiz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ir contribution to profit making.

We can derive some policy issues from the OECD

discussion on this matter. First,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should be properly defined for these kinds of financial trading. Second, the ways to attribute profits to dependent agent PE should be clearly harmonized. Third, the way to choose the best method rule for the attribution of profits should be refined. Fourth, the ways to hedge the risks within the financial group should be consistently dealt with. Fifth, when the profit split method is applied, how to share the losses should be addressed. Sixth, we have to reevaluate the unitary taxation as an alternative for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system.

The emphasis on capital in the attribution of profits is not a favorable factor for less-capitalized countries like Korea. Because Korean financial companies are not yet the equals to international financial powerhouses, nor is Korea yet suitable for a regional financial hub like Hong Kong or Singapore.

Notwithstan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more specific in providing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by revising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ecause the discussion at the OECD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is not concluded, it is not easy to refine the system. But to reduce the uncertainty facing the global players are one of the goals of Korean government to meet the global standard and it also is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Korean tax authorities also had better be prepared for the introduction of unitary taxation system, though it may take some time to be realized. The current system based on

Arm's Length Principle shows a lot of problems in actual application. Economically integrated European countries are showing renewed interest on the unitary taxation system. The pros and cons of unitary taxation should be studied and the best strategic road map for the Korean tax authorities should be carefully managed. The minimum effort to achieve those goals is an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ax fora.

<著者略歷>

洪 範 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미국 New York 시립대학교 Queens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政策報告書 04-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홍범교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팩시밀리 :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4

ISBN 89-8191-286-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